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2015. 4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2015. 4

KOICA

저자

박 수 영

▶ 주요 경력

- KOICA 연구개발팀 팀장 (carpediem@koica.go.kr)
-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 주요 저서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 지수를 중심으로", 개발과 이슈 제18호, KOICA, 2014.
-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분석 및 우리원조 대응방안", 개발과이슈 제17호, KOICA, 2014.
- 개발공헌지수(CDI)의 의의와 한계 및 우리원조에 대한 시사점 고찰, KOICA, 2014.
- "DAC가입에 대비한 KOICA의 과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제4호, pp.52-83, KOICA, 2009.
- "Analysis of Saemaul Undong: A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 16, No. 2, pp.113-140, UNESCAP, 2009.

▶ 학위 논문

- "The Emergence of the Merit-Based Bureaucracy and the Formation of the Development State: the Case of South Korea in a Historical Perspective,"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13.

조 한 슬

▶ 주요경력

- KOICA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hcho@koica.go.kr/hanseul83@hot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주요 저서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산물 가공,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4.
-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KOICA, 2013.
-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KOICA, 2013.
- 글로벌 도전과제와 개발협력: 인구나 가족계획, 개발협력포커스 제13호, KOICA, 2012.
-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KOICA, 2012.
-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및 시사점, 개발협력포커스 제8호, KOICA, 2011.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요약	1
Executive Summary	3
 제1장 Post-2015 개발체제를 위한 개발자원 마련과 원조 정의 현대화 논의 ...	6
 제2장 공적개발원조 정의의 현대화	9
1. ODA의 정의	9
1) OFFICIAL(공적)	10
2) DEVELOPMENT(개발)	11
3) ASSISTANCE(원조)	13
4) 기타공공지원 (Other Official Flows)	15
2. ODA 정의 현대화 논의	17
1) 목적 및 해석 측면: 평화와 안보의 개발과의 연계성	17
2) 양허성 측정방식 변화	25
3) 흐름(Flows)의 의미변화	30
4) 공여국내 지출 (in donor cost)	30
 제3장 새로운 개발자원 측정수단의 도입 : 총공적개발지원(TOSSD)	33
1. 개념 및 특징	33
2. 주요 이슈	35
1) 평화, 안보, 인권 등 개발의 촉진제 (Enablers for development)	37
(1) 안보와 정의 관련 TOSSD	37
(2) 평화유지활동 관련 TOSSD	38

(3) 인권 관련 TOSSD	40
(4) 공여국내 난민비용	41
(5) 글로벌 공공재: 국제적 기준 수립 국제기구	42
2)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을 사용한 지원	43
(1) 복합금융 및 수출신용	43
(2) 시장유사수단 관련 TOSSD	43
3)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TOSSD 측정	46
4) 기후변화 관련 TOSSD의 측정	46
5) 행정성 경비 관련 TOSSD의 측정	49
 제4장 ODA 정의 변화 및 TOSSD도입에 대한 논의 분석 및 대응	51
1. 개발재원의 정확한 규모 파악으로 원조효과성 개선	52
2. TOSSD 도입으로 인한 ODA 지원의 실질적 감소 우려	53
3. TOSSD 구체화를 위한 상세기준 논의의 시급	53
4 ODA 정의 변화로 인한 최빈국이나 취약국의 개발자원 감소 우려	55
 제5장 한국개발원조에 주는 영향	57
1. 무, 유상원조 비율 변화 및 유상원조 금액 증가	57
2. 혁신적 개발자원 등 새로운 사업형태 및 방식 도입 필요성 증대	61
3. 개발협력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부담 증대	62
 제6장 결론	63
 참고문헌	64
 첨부 1. OECD DAC HLM Communique (국영문)	67
첨부 2. DAC 수원국 리스트 (2014-2016년 보고용)	86
첨부 3. DAC List of ODA-eligibl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channels of delivery codes) for 2013	87

표 목차

표 1. 평화와 사법 ODA 정의 관련 주요 논의사항	22
표 2. OECD/DAC이 검토한 6가지 양허성 차관 기준 변경안	26
표 3. ODA차관 측정방식 변화	28
표 4.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 개념	44
표 5. 소득그룹별 ODA흐름	56
표 6. 증여치 도입과 주요 차관공여국의 양자 ODA변화(2012년) (백만불, %)	58
표 7. 2013년도 OECD/DAC 회원국별 OOF합산 효과	60

그림 목차

그림 1. 우리나라 OOF 금액 및 구성 변화(2004-2013)	16
그림 2. 평화와 안보의 주요 이슈	18
그림 3. 개발재원의 분류	36
그림 4. 개발재원의 재분류	52
그림 5. 주요 공여국별 ODA차관 평균 증여율	58
그림 6. 할인율 변화에 따른 주요 공여국별 양자 ODA차관 증여율(2010)	59

Box 목차

Box 1. ODA의 정의	9
----------------------	---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지난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지원방식 중 원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원조 자금 흐름 산정을 위해 원조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현재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확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의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세계적인 저금리기조 등 ODA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OECD/DAC 회원국들은 고위급회의(HLM)에서 1차적으로 유상원조 측정 방식을 개정하는데 최종 합의 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이라는 새로운 지원 개념을 도입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유상원조 측정방식 개정은 원조금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TOSSD의 도입은 기존의 원조사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DA의 정의 변화나 TOSSD의 도입이 주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DA정의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양허성 개정의 의미, 그리고 TOSSD의 의미와 범위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원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번 양허성 차관 기준 재선정과 ODA재정의, TOSSD

도입으로 국내외적 개발원조에 여러 가지 변화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금번 새로이 개정된 증여율 산정방식 적용으로 각 공여국별 ODA총액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ODA총액 증대 관련 국제적인 목표인 ODA/GNI 0.7%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유상차관 측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여국은 ODA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적 착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양허성 차관의 기준 재선정으로 인해 향후 차관이나 민간투자는 최빈국이나 취약국보다는 중, 고소득그룹의 개도국으로 집중되는 현상 불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TOSSD 신설은 ODA외에 폭넓은 공적개발재원이 존재하는 국제개발 현실을 DAC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개도국으로의 유입된 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으로 하여금 국가계획이나 재정운영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TOSSD의 도입으로 ODA가 TOSSD로 대체되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ODA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ODA 정의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별 ODA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논의를 보이고 있으며, OECD/DAC 회원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우리원조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ODA 증대 목표 달성방안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상원조액 증대에 따른 원조의 질 저하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사업방식의 현대화 및 사업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ODA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OECD의 협의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Since the 195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vid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ed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ODA to clarify its meaning and to accurately calculate the flow of ODA, among other flows. The current definition of ODA was adopted by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but has been subject to discussions on redefining it as the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evolved. Recently, this issue has been more actively discuss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w interest rates.

Accordingly, OECD DAC has agreed to modernize the definition of ODA and the OECD DAC High Level Meeting (HLM) in December 2014 reached a final agreement to revise the current ODA accounting rules and the definition of concessionality for ODA loans. In addition, it decided to adopt a new measure provisionally name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by the end of 2015. It also showed reaffirmation to defin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OSSD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 calculation of aid volume and represents a shift in the existing paradigm of ai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new definition of ODA and the significance of TOSSD is necessary to adopt relevant policies

and pursue effective aid programs. In this relation, this study will delineate numerous arguments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ODA and TOSSD, and the significance of modifying the concessionality of ODA loa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se recent changes will influence our current ODA system and come up with effective suggestions.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ecently proposed changes ranging from modified concessionality of ODA loans, redefinition of ODA to introduction of TOSSD,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on existing development aid program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 new way of measuring grant equivalents of ODA loans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total ODA volume for each donor countries, which would also affect the global ODA/GNI target of 0.7%. As a result of change in the percentage of the grant element of ODA loans, most donor countries including Korea may experience statistical illusion by which the ODA volume goes up temporarily. Due to modified concessionality of ODA loans, loan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s in the future may be focused on developing countries in middle-income countries (MICs) and high-income countries (HICS), rather tha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or fragile states.

The new TOSSD measure seeks to acknowledge the development efforts of donor countries by capturing broadened development flows in the DAC statistics. Moreover, TOSSD will measure the total volume of

development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thereby allowing these recipient countries to effectively establish country strategies and budget plans. Meanwhile, there are remaining concerns that TOSSD would replace ODA or actual ODA would decrease as a consequence of increasing TOSSD.

The OECD/DAC member countries are engaging in a heated debate and have different stances on redefining ODA based on national interests, as the outcomes have direct influence on each countries' ODA performance. Republic of Korea too, needs to scrutinize the impact of the changes and ongoing discussions and come up with response strategies including modifying ways to achieve the current objective of increasing ODA. The most urgent issue is to devise measures against criticisms about the quality degradation of assistance, as ODA loans take up a larger portion of aid. Equally important is the issue of modernizing how aid projects are carried out and improving the project management system. Finally, we need to reinforce our research capac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o that we are able to suggest proactive alternatives to OECD agreements in the future.

제1장 Post-2015 개발체제를 위한 개발재원

마련과 원조 정의 현대화 논의

국제사회는 지난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해왔다. 국제사회는 또한 다양한 지원방식 중 원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원조 자금 흐름 산정을 위해 원조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현재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의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세계적인 저금리기조 등 ODA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 시한이 마감되면서, MDGs를 이을 후속적인 개발체제 구축 마련을 위한 준비가 활발해지면서, 기후변화, 분쟁 증대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개발협력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기존의 OECD/DAC회원국 중심의 전통적 공여국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오던 개발을 위한 공적재원의 공급 상황이 불투명해진 반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원의 수요, 공급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산을 보면 이러한 격차의 심각성이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Post-2015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부문은 380억불, 보건은 370억불, 물과 위생에 267억불, 식량과 농업부문에 500억불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Greenhill and Ali, 2013). 개도국의 자체 조달 자금 등을 고려해도 매년 1,860억불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반면, 2012년 기준 DAC회원국의 총 ODA는 1,260억불이었다 (Bhushan, Samy and Medu, 2013). 한편, 세계은행 (2011)은 세계적으로 기온이 2도정도 상승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기위해 개도국들은 향후 40년간 매년 750-1,000억불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resilience)하기 위해서는 완화(mitigation)비용이 연간 1,400-1,750억불 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은행, 2009).

이러한 재원의 수요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다각화에 주목했다. 개도국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수익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흥공여국들의 기여제고와 민간재원과의 결합 등을 통한 재원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방안을 고민해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개발지형 속에서 ODA 정의 현대화와 새로운 지원 측정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OECD/DAC 회원국들은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HLM)에서 1차적으로 유상원조 측정 방식을 개정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이라는 새로운 지원 개념을 도입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유상원조 측정방식 개정은 원조금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TOSSD의

도입은 기존의 원조사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DA의 정의 변화나 TOSSD의 도입이 주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DA정의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양허성 개정의 의미, 그리고 TOSSD의 의미와 범위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원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현대화

1. ODA의 정의

OECD/DAC은 1961년부터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자금흐름(resource flows)을 측정해왔다. 이를 위해 OECD/DAC은 1969년 최초로 ODA 정의를 만들었고, 1972년에 보다 강화하여 동 정의를 확정하였다. OECD/DAC이 말하는 ODA란 “공적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되는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호한 정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문의가 증대함에 따라서, OECD/DAC의 통계국은 DAC 통계보고지침(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왔으며, 2008년에는 문의에 응답할 때 활용하는 내부 기준들을 정리한 문서인 “Is it ODA?”를 발간하였다. 동 문서에 따르면 ODA는 DAC의 수원국 리스트¹⁾에 적시된 국가와 영토 또는 다자개발협력기구²⁾에 제공되는 흐름(flows)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Box 1. ODA의 정의

- 1)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정부의 실행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 2) 각각의 거래(transaction)는
 - 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또한
 - 나) (10% 할인율로 계산하였을 때) 증여율이 최소 25%이상이며 성격적으로 양허성을 가져야한다.

출처 : OECD (2012a), OECD (2008)

1) 첨부 2 참조. 원문은 www.oecd.org/dac/stats/daclist에서 확인 가능.

2) 첨부 3 참조

즉 ODA는 공공성과 개발목적을 갖춘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살펴본다.

1) OFFICIAL(공적)

ODA에서 공적이라는 의미는 민간의 반대를 의미한다. 즉, ODA는 공여국의 중앙/지방 정부나 공여국 정부가 원조업무를 위임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적이라는 것은 또한 자금의 모집, 집행에서 **공공성을 가져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ODA정의에서 공공성은 자금의 원천 그 자체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즉, 조세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이나 민간부문에서 빌린 자금이나 모두 공적개발원조로 계산될 수 있다. 중요한 차이는 자금을 모집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공공부문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지원 금액의 공공성을 판별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OECD는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모집금액, 민간의 기부금, 민간기업의 개도국 투자 등은 ODA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이나 이차보전 등의 공적행위를 통해 모집 및 집행하는 경우에만 ODA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기금이 이전된 경우는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우리정부와 NGO가 공동으로 ODA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지급금액에 한해서만 ODA로 집계되며 NGO가 자체적으로 모집한 금액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개도국 정부로 OECD 양허성기준을 충족시키며 지원한 차관은 ODA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차입이자율과 지급이자율 사이 차이를 보전하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1972년에 확정된 ODA의 정의에는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OECD (2008)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보조는 정의상 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ODA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지원은 기타공적지원(Other Official Flows, OOF)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ODA는 공여국 공공기관과 수원국 공공기관간의 지원으로 한정되며, 따라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다. 특이한 사항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나 공여국 및 국제 NGO에 대한 공공지원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ODA로 계상된다.

2) DEVELOPMENT(개발)

ODA의 두 번째 충족요건은 지원 목적과 관련된다. ODA로 계상되기 위해서는 지원의 목적이 수원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연관성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군비지원과 같은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지원은 ODA로 계상되지 못한다.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과의 관련성이 모호한 분야에 대한 지원의 ODA 인정 여부와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³⁾

- 군사지원(Military aid) : 군수물자나 서비스의 지원(Grant), 군사목적으로 발생한 차관의 면제는 ODA로 보고될 수 없다. 그러나 공여국 군대의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비용은 ODA로 산정가능하다.
- 평화유지(Peacekeeping) : 군사지원의 경우를 준용하여 대부분의 평화유지 비용 또한 ODA에서 제외된다. 특히, 평화유지활동 중 강제 활동

3) <http://www.oecd.org/dac/stat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

ODA의 경제사회개발 목적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s it ODA? (OECD, 2008), ODA Conditions and Coverage (<http://www.oecd.org/dac/stat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 및 OECD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참조

(enforcement)은 ODA로 보고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집행된 순수 양자 지원비용은 ODA로 계상가능하다. ① 인권, ② 선거감시, ③ 제대 군인 재활이나 국가인프라 재건, ④ 군인 해산 및 귀환 지원, ⑤ 지뢰제거 및 무기 해체 활동이다. 한편, UN 평화유지활동이외에도 위와 같이 일부 개발연관활동들은 ODA로 보고 가능하다. 또한, 개발과 무관한 활동들은 (군대 훈련을 위한 목적의 지뢰제거 등) 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ODA로 보고되지 못한다.

- 대테러리즘 (Anti-terrorism) 테러행위는 수원국보다는 주로 공여국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되며 대테러리즘 활동은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ODA로 보고될 수 없다.
- 민간경찰활동 (Civil police work) 경찰훈련비용은 대테러 정보수집행위나 대게릴라전과 같은 준군사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ODA로 보고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불복종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여국 경찰서비스 제공은 보고할 수 없다. 핵에너지의 군사적 사용이나 핵확산 방지 관련 활동은 제외된다.
- 핵에너지 (Nuclear energy) : 핵발전소 건설, 핵안전 관련 및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 사용 등 평화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활용의 경우 ODA로 보고 가능하다.
-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 (Social and cultural programmes) : 수원국의 문화역량배양을 위한 경우 ODA로 계상가능하다. 그러나 공여국 예술인, 체육선수의 일회성 공연이나 방문, 또는 공여국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활동들은 제외된다.
- 난민지원 (Assistance to refugees) : 개도국에서 공여국에 도착한 난민에 대한 임시지원은 첫 12개월간의 비용 또는 개도국으로의 귀환 준비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만 ODA로 계상가능하다.

- 연구 (Research) : 개도국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ODA로 계상된다. 여기에는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복지진흥인 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기관목적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인 기관으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 지원을 받아 의뢰, 승인된 연구들이 해당된다. 원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위해 수행된 연구는 관련 활동의 일부 또는 행정비로 계상될 수 있다.

3) ASSISTANCE(원조)

ODA의 세 번째 요건은 원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여국은 이 지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ODA는 100% 증여인 무상원조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서 지원 금액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비교하여 계산하였을 때 상환하지 않는 비율,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관(이를 양허적 차관이라 부르며 유상원조가 이에 해당됨)만을 포함한다.

무상원조의 경우, 100%의 증여율을 가진 증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유상원조의 경우,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 차관조건에 따라서 양허성이 결정되므로, 각각 차관의 증여율을 계산하여 일정 수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ODA로 계상된다.

OECD/DAC에서 양허적 차관을 판단하는 기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 할인율로 계산하였을 때) 증여율이 최소 25%이상이며 성격적으로 양허성 (concessionality in character)을 가져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다.⁴⁾ 증여율은

4) 2014년 12월에 OECD/DAC HLM에서 ODA정의 관련 개정된 사항은 유상 차관의 양허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위의 2) 나 항의 “(10% 할인율로 계산하였을 때) 증여율이 최소 25%이상이며 성격적으로 양허성을 가져야한다”는 조건들이 보다 복잡하게 변경된 것이다.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이라는 지원의 금융 조건을 반영하여, 차관의 양허성(연성/softness) 정도를 측정한다. 증여율은 차관의 액면가와 차입자(borrower)가 갚아나갈 비용의 할인된 현재가치간의 차이를 측정하며, 액면가의 퍼센트로 표현된다.

양허성은 차입자의 이익 또는 대출자(lender)의 기회비용을 측정하며, 이 둘은 차관의 이자율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차입자의 이익을 계산할 때, 양허성은 차입자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지불해야할 시장이자율과 해당 차관의 이자율 사이의 차이로 계산된다. 대출자의 비용을 계산할 때, 양허성은 대출자가 자본을 가장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처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해당 차관에서 받을 이자수익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DAC통계는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비용을 측정하며, 이때의 일반적인 기회비용은 국내투자자금을 원조로 전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증여율을 계산하기위해 비교할 금리(할인율)를 결정한다(OECD, 2013).

1970년대 초반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ODA차관의 구체 조건이 결정되었고, 이 구체화된 조건이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25%이상의 증여율을 갖는 차관의 경우 차관액 전액을 ODA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같이 시장이자율이 높았던 경우에는 이 조건 자체로도 차관의 성격적 양허성 (concessionality in character)이 충족되었다.⁵⁾ 그러나, 최근 OECD회원국 대부분에서 장기 이자율이 10%이하로 하락하였고 따라서 1970년대에 정해진 이 조건을 지켜 차관 증여율이 25%가 넘는다 하더라도, 성격적으로 양허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 15일 개최된 OECD/DAC의 HLM에서 증여율 계산 방식이 개정되었다.

5) 양허성과 비양허성금융이 혼합된 “혼합금융패키지(associated financing packages)”의 경우, 공적이면서 양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5%이상의 증여율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ODA로 계상된다. 또한 혼합금융패키지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수출신용을 위한 약정”과 시장 이자율에 기초한 특별 양허성 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

4) 기타공공지원 (Other Official Flows)

OECD/DAC에서 추적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흐름 중 또 다른 공적자금흐름은 기타공공지원(Other Official Flows, OOF)이다. OOF는 개발목적이 아니거나 충분한 양허성을 갖지 못하는 등 앞에서 기술한 ODA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아 ODA로 계상되지 못하는 공적자금흐름을 말하며 (OECD, 2013), 주로 아래와 같은 8개의 자금흐름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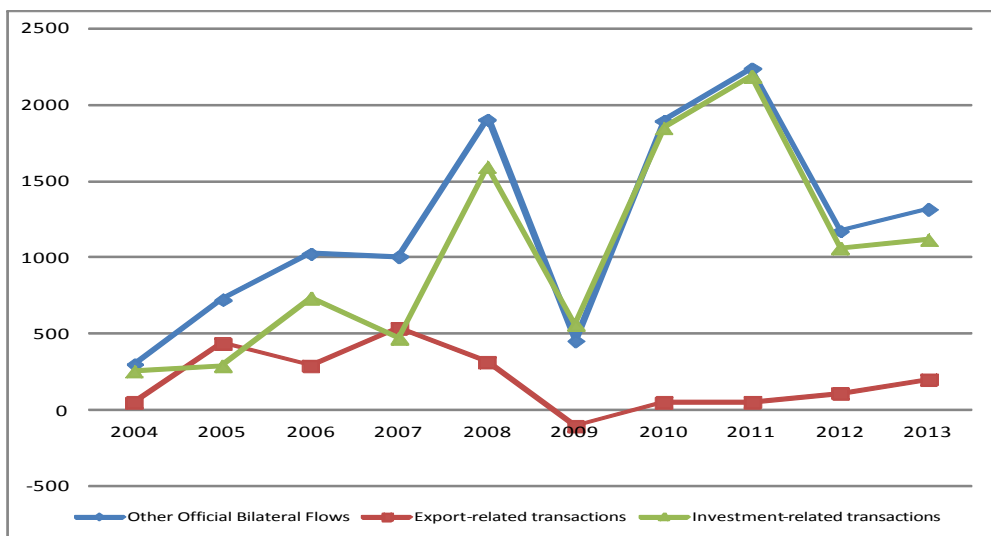
- 1) 상업적 또는 표상적인 (representational)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된 증여
- 2) 개발을 목적으로 하나 성격적으로 충분히 양허적이지 못하거나 25%이하의 증여율을 갖는 공적양자지원 (official bilateral transaction)
- 3) 증여율에 관계없이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양자지원. 공공기관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수출신용 (공공직접수출신용) 포함
- 4) 정부나 중앙통화기관이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시장조건으로 구매한 금액 (판매액을 제외한 순 금액)
- 5) 개발도상국의 신용 완화를 위해 민간섹터에 지원된 보조금 (증여)
- 6) 민간투자 지원 기금 (개발도상국의 특정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의 민간 기업에게 공적섹터가 지원하는 차관이나 증여)
- 7) ODA로 계상할 수 없는 공적섹터의 직접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equities and shares)
- 8) 공적섹터의 비양허성 non-ODA 채무 재조정과 군사채무탕감

현재 OOF는 주로 비양허성 차관과 민간에 대한 공적 투자액, 수출신용으로 구성된다. 양허성 측정 기준 변화와 TOSSD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OOF는 ODA와

TOSSD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까지 증여율 25%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ODA로 계상되지 못하던 많은 비양허성 차관이 이제 기준 변화로 인해 ODA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에 대한 공적투자액과 변경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양허성 차관은 TOSSD로 계상될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4j). 이외에도 TOSSD의 세부정의와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OOF 중 대부분은 TOSSD로 계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ECD/DAC회원국들의 현재의 OOF 구성과 조건들에 따라 향후 각 국별로 ODA금액이 일정부분 증대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증액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OOF의 구성을 보면 더욱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OOF는 대부분이 차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OOF 차관 중 변경된 증여율 기준을 충족하는 차관은 ODA로 재분류되고 이는 우리나라 ODA 금액의 증액 및 ODA 중 유상원조 비율 증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우리나라 OOF 금액 및 구성 변화(2004-2013)



출처 : stat.oecd.org dataset 토대로 저자 작성

2. ODA정의 현대화 논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통용되는 ODA의 정의는 OECD/DAC에서 1972년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모호한 정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문의가 증대함에 따라서, OECD/DAC의 통계국은 지속적으로 정의에 대한 해석을 추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ODA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폭넓다. 특히,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이 주된 목적이 되는 지원이라 할 때 주된 목적과 부차적 목적의 구분 문제, 국제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흐름의 ODA계상문제, 성격적 양허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준 설정 등이 주요 논쟁의 이슈가 되고 있다. Roodman(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여국들은 ODA 증액 부담에 늘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이 ODA로 계산, 보고되길 원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ODA의 정의에 대한 변화 논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1) 목적 및 해석 측면: 평화와 안보의 개발과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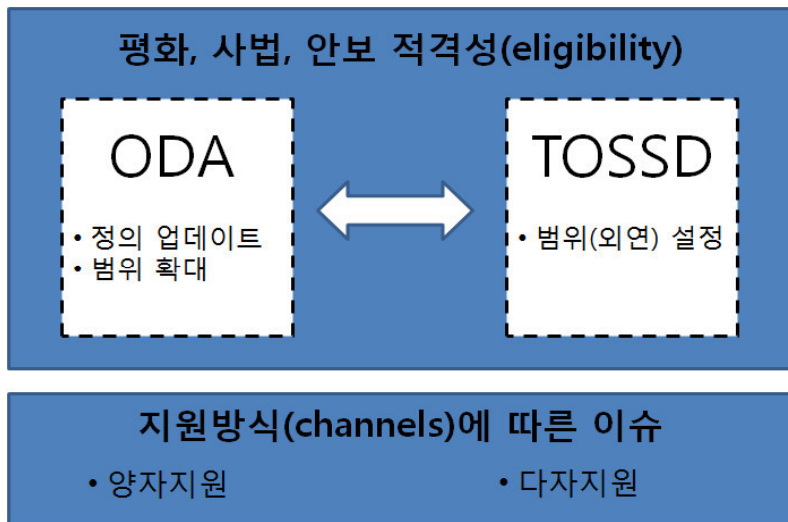
목적 및 해석의 측면에서 진행된 ODA 정의 변화 논의를 살펴보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과 안보 및 치안유지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특히 개도국 분쟁에 대한 공여국들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평화유지와 안보가 개발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 하에 공여국들은 다양한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⁶⁾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새롭게 ODA 및 나아가 TOSSD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대두되었는데, 첫째, 평화와 안보의 ODA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또는 업데이트 할 것인가, 둘째, 첫 번째

6) 'Peace and Security'를 관행적으로 평화, 사법 또는 평화, 사법, 인권으로 번역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논의와 연계하여 ODA 확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ODA가 아닌 TOSSD로 인정할 것인가와 TOSSD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셋째, 평화와 안보 분야 관련 ODA 적격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액은 전액이 ODA로 인정되는 반면,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원조는 특정 비율(coefficient)만 인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였다. 이중 두 번째 이슈는 3장의 TOSSD 논의에서 상세 서술하기로 하고, 이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2. 평화와 안보의 주요 이슈



출처 : OECD. 2014, p. 2.

먼저, 현재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평화와 안보 관련 지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ODA로 계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7) 평화와 안보 관련 현재의 ODA 적격 기준은 2005년 HLM에서 결정되고, 2007년 재확인되어 설정된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문서 DCD/DAC(2007)23/REV2를 참조.

- 안보방위 예산지출시스템개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통제관련 안보시스템 개선과 같은 안보(방위)시스템 관리 및 개선 사업에 지원된 원조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more specifically management of security expenditure, enhancing civil society' s role in the security system, security system reform to improved democratic governance and civilian control)

- 평화구축,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Support to civilian activities related to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인권, 선거관리, 국가 인프라 재건, 지뢰제거 관련 UN 평화유지활동 지원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for specific activities such and human rights and election monitoring, rehabilita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explosive mine removal (costs for military contingents participating in UNDPKO operations are not reportable as ODA))

- 제대군인 통합, 소형무기 관리 지원

(Reintegration of demobilised military personnel and small arm and light weapons control)

-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제거 지원

(Removal of land 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 소년병 모집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지원

(Technical co-operation to support the prevention of recruitment of child soldiers)

평화와 안보 관련 지원 중 현재 ODA로 인정되지 않는 지원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수물자나 서비스 지원, 군사목적으로 발생한 차관의 면제, 대테러리즘 활동, 준군사활동과 연계된 경찰 훈련비용, 시민불복종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서비스제공, 핵에너지의 군사적 사용, 핵확산방지관련 활동 등이 있다.⁸⁾ 그러나, 테러확산 및 분쟁 증대 등 국제정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OECD/DAC은 상기 평화와 안보 분야의 ODA 기준이 2005년 HLM에서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의가 사무국에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OECD 2014b). 이에 따라, DAC 사무국은 2014년 6월 평화와 안보 관련 논의를 ODA의 적격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논의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님 ODA의 정의를 확대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개진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다(OECD 2014a).

한편, ODA 범위 확대 논의 중, 다자기구 지원 ODA 계상률 변경을 통한 ODA 확대는 논의에서 제외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UN평화유지활동국(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 UNDPKO)에 지원하는 평화유지활동 비용은 지원액 전액이 ODA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DAC에서 정하는 ODA적격계상률(coefficient)만큼만 ODA로 계상된다. 이에 따라 DAC 사무국은 주기적으로 ODA적격계상률 산정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2-13년도 평화와 안보 분야 다자기구 지원의 통계 보고 시, 지원액 산정을 위해 적용될 ODA적격계상률(coefficient)을 산정을 위해 관련 연구조사가 최근에 실시된 바 있다.⁹⁾ 이 조사 결과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UNDPKO의 예산은 총 75억 달러이며, 이 중 약 7%의 예산이 개발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93%의 예산은 주목적이 '안보' 활동이며, 군 인사에 의한

8) 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9) 다자기구 지원액의 경우 지원액 100%가 모두 ODA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ODA 적격기구 리스트 상에 있는 국제기구에 한하여 계상률(coefficient)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ODA로 보고한다.

집행된 금액으로 확인되었다(OECD 2013b).¹⁰⁾ ODA로 인정받지 못하는 93%의 지출비용을 세분화 및 재분류하여, ODA적격계상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하여서, 사무국은 동 방식의 경우 공여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ODA 금액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회원국들이 회람한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ODA 적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안보 관련 ODA의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선에서 동 논의를 개선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ECD 2014e). 이에 따라 평화와 안보 분야의 ODA 적격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UN이 승인한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다자지원 전액을 계상할 것인가 등)와 관련하여서, ODA 정의 확대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이슈는 TOSSD로의 포함여부에서 동일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DA 재정의와 관련하여서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문구 및 사례집의 문구 및 해석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¹¹⁾

이후 DAC 사무국과 회원국은 논의 구체화를 위해, 동 이슈를 OECD 분쟁 및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와 개발재원-통계작업반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과 2015년 총 2차례의 관련 회의 개최를 통해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문구를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안보 분야의 DAC 통계보고지침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10) 나머지 93%의 예산은 주목적이 '안보' 활동이며, 군인사에 의한 집행된 금액이다. (OECD (2013b))

11) 상세내용은 3장의 TOSSD 서술 참조

표 1. 평화와 사법 ODA 정의 관련 주요 논의사항

DAC 통계보고지침 상 문구	주요 논의 사항
[para. 77: engagement with military] 군수물자나 서비스의 지원(Grant), 군사 목적으로 발생한 차관의 면제는 ODA로 보고될 수 없다. 군인의 훈련 역시 훈련내용에 상관없이 ODA로 보고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이나 긴급상황 제어를 위한 군사 지원도 ODA로 보고될 수 없다. 반면,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원된 군사지원은 고정비용(regular salaries and expenses)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한해 ODA로 계상가능하다.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과시하는 활동은 인도적지원의 차원에서 실시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ODA로 계상되지 못한다. 군사부채탕감은 OOF로 보고할 수 있다.	○ 군수물자나 서비스의 지원은 모두 ODA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인도적 지원의 경우 추가비용만 ODA로 계상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동 문구의 구체화 필요성 ○ 추가비용(additional cost)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 평화유지활동 규정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되었을 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으로 해석해도 될지 여부 논의 ○ 수원국 군사나 군수물자를 사용하여 ODA 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추가적 비용의 측정방법 ○ 군사목적의 활동은 ODA로 계상되지 않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활동에 안전, 치안유지, 소방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 ○ 개발목적이 확실한 군사-시민합동 훈련의 경우, ODA로 보고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의 여부 등
[para. 78: engagement with police] 경찰훈련비용은 대테러 정보수집행위나 대게릴라전과 같은 준군사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ODA로 보고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불복종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여국 경찰서비스 제공은 보고할 수 없다.	○ 수원국의 경찰의 훈련을 위한 공여국 경찰의 서비스 제공은 ODA로 계상 가능한지 ○ 공여국 경찰의 서비스 제공시 해당 경찰의 기본 봉급(salaries)의 ODA 계상여부 ○ 무력의 사용이나 과시는 ODA로 계상이 불가능한데, 순찰활동의 경우는? 무장, 비무장 여부에 따라 ODA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건지의 여부 ○ 경찰이나 교도소 등의 치안유지기구에 관련 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ODA로 계상가능한지, 무기제공으로 보아 ODA 계상이 불가능한지 등

DAC 통계보고지침 상 문구	주요 논의 사항
para. 79: combating terrorism 대테러리즘 활동(activities combating terrorism)은 수원국보다는 주로 공여국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되며 대테러리즘 활동은 수원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 않으므로 ODA로 계상되지 못한다.	○ 대테러리즘 활동의 해석상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combating’과 ‘preventing’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동일한 사업이라도 prevention이라고 사업이 설명될 경우에는 ODA로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ODA로 계상되지 못하는 사례 빈번 ○ 대테러리즘 활동이 수원국보다는 주로 공여국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된다는 문구도, 시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문구라는 지적이 있었음. 최근에는 개도국의 특정 지역에 위협이 되는 테러활동이 증가하였음. ○ 태스크 팀은 동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rule of law relat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primarily benefiting developing countries”로 통계보고지침의 문구를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함.
para. 80 i)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i.1. 안보 예산지출시스템 관리 군 예산을 포함하여 안보관련 예산 집행 관리 시스템의 민주적 개선 및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활동은 ODA에 포함된다. (예: 군급여시스템 개선작업은 ODA 비포함, 국방예산의 민주적 관리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지출관리프로그램 도입은 ODA에 포함)	○ 안보시스템 개력과 관련하여, 군 내부의 인권 및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활동, 살상활동을 제외한 군사 역량강화 활동을 ODA에 포함시킬지 여부 ○ 안보 예산지출시스템 관리 관련, 군 급여 및 연금시스템 개선 사업, 국방 조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ODA로 포함시킬지 여부 등
i.2. 안보시스템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민주적 원칙, 책무성, 투명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안보시스템 감시 역할 개선을 위한 지원은 ODA에 포함된다. (NGO, 기타 시민사회 기구, 미디어, 대학,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나, 군사기술 훈련과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관련 기구나 무력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DAC 통계보고지침 상 문구	주요 논의 사항
i.3. 안보시스템 개혁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통제를 위한 안보시스템 개선작업이 국회, 정부부처, 법집행기구, 사법부와 기술 협력을 통해 실시되었을 경우 ODA 포함된다. 단 비군사적 역량강화 및 전략수립활동에 국한하며, 국방부에게 제공되는 지원일 경우 국가안보시스템 개선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하여 파트너 국가의 승인이 있는 사업에 한정된다.	
para. 80 ii)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별도 논의사항 없음.
para. 80 iii)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UN이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집행된 순수 양자 지원비용은 ODA로 계상가능하다. ① 인권, ② 선거감시, ③ 제대 군인 재활이나 국가인프라 재건, ④ 군인 해산 및 귀환 지원, ⑤ 지뢰제거 및 무기 해체 활동이다. 군 파견비용은 ODA로 포함되지 않는다.	○ ODA로 인정되지 않는 군 파견비용을 세부적으로 지침 상에 명시할 필요성 여부 등
para. 80 iv)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제대군인의 사회 통합 지원, 군사생산 시설의 일반 시설 전환, 무장세력 해체, 무기 해체 활동, 소형무기 해체 및 관리 활동 등은 ODA에 포함된다.	○ 정규군의 해산은 ODA로 보고되지 않는데, 해산된 군인의 사회통합 활동과 무장세력의 해산 활동은 ODA로 계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이 통계보고지침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여부 ○ 국내 및 국제적 무기해체 관련 활동이 개도국의 경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여부
para. 80 v) removal of land 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 별도 논의사항 없음.
para. 80 vi) child soldiers	○ 별도 논의사항 없음.

출처 : OECD (2015), 저자 요약정리

상기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평화와 사법 분야의 ODA 재정의 논의는 기존의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여, 회원국 별 해석상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문구 추가 또는 사례집의 사례를 추가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INCAF-개발재원통계작성반 공동 태스크포스팀의 회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 개최될 통계작성반 공식회의에서 동 안건의 최종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 양허성 측정방식 변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여율(Grant Element)이란 지원금액의 금융조건인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기간으로 계산되며, 차관의 양허성 정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시되는바, 증여율로 번역된다. 증여율은 예상되는 상환액의 현재가치가 기준이자율로 산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상환액의 현재가치의 퍼센티지를 의미한다. DAC통계상 2014년도 까지 기준이 되는 할인율은 10%였다. 따라서 이자율 10%인 차관은 증여율 0%이며, 모든 무상원조는 증여율 100%이고, 이자율 10%이하의 차관은 증여율 0%와 100%사이에 위치한다. 25%이상의 증여율을 갖는 차관만이 현재 ODA로 인정받는다.

양허정도(Concessionality level)란 신용의 “연성정도(Softness)”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증여율과 같이, 양허정도 또한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모두 계산한다. 차이점은 기준이자율이 10%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차등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s, DDR)¹²⁾과 같이 시장조건에 기초한 통화별

12) 차등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s, DDR)은 OECD의 공적수출신용지원협약 하에서 차관의 양허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 체제는 제3국에 대한 지원의 최자양허정도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차등할인율은 차관의 통화에 따라 다르며 매년 1월15일에 수정된다. 차등할인율은 지난 6개월간 평균 상업참고금리(CIRRs)에 고정된 이율을 더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15-20년 만기 차관에 대한 가산이율은 1%이며, 따라서, 동일한 만기율을 가진 차관에 대한 차등할인율은 최근 상업이자기준율보다 1%

다른 이자율이란 점이다. 따라서 증여율과 동일하게 양허성도 부채의 현재가치를 차관의 명목금액으로 나눠서 표시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ODA로 인정되기 위해서 차관은 양허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성격적 양허성”이라는 개념은 DAC문서에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바, 회원국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해석되었다. 특히, 2012년 독일과 프랑스가 자신들이 시장에서 차입하여 개도국에 제공한 차관의 성격적 양허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OECD, 2012, p.3) 저금리 기조에서 ODA차관의 성격적 양허성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OECD/DAC는 저금리기조로 인해 현재의 증여율 기준이 성격적 양허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2년 HLM을 통하여 2015년까지 양허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결의하였고,¹³⁾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옵션을 논의하였다.

표 2. OECD/DAC이 검토한 6가지 양허성 차관 기준 변경안

측정방식	양허성 평가기준	할인율	옵션
Grant Equivalent Method	대출기관(공여자)의 조달비용 고려	IMF/WB rate	A
		OECD DDR (differentiated discount rates)	B
	대출기관(공여자)의 조달비용 + 위험 고려	IMF/WB Rate+Risk Premium	C
		OECD DDR+Risk Premium	D
Cash-Flow Method	대출기관(공여자)의 조달비용고려	IMF/WB rate (35%threshold)	E
	대출기관(공여자)의 기회비용 고려	10%(25%threshold), 성격상양허성에 대한 분석 필요	F

출처 : OECD, 2014 Options of Concessionalty

높으며, 따라서, 국제이율보다 2%높다.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 CIRRs)는 OECD의 공적수출신용지원체제하에 적용되는 최저이자율이다. 상업참고금리는 대부분의 공적수출지원에 적용되는 일반상업이자기준율과 특정 섹터이해(Sector Understandings)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상업이자기준율로 구분된다. 상업이자기준율은 이전 달 제2시장 국제의 평균수익율에 기 합의된 이율(일반적으로 1%)을 더하여 계산한다.

13) 2012년 HLM은 총공적개발자원의 새로운 측정방식에 대한 합의, ODA개념 현대화 논의, 공여국의 노력과 수원국의 혜택을 반영하는 측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증여등가액방식이란 차관지원액 중 증여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공여국의 노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과 동일한 현금흐름방식은 보고체계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 옵션 F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며, 옵션 E는 증여율 기준치를 현재 25%에서 35%로 상향조정하고 할인율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5%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와 다른 측정방식인 증여등가액방식을 사용하는 옵션 A, B, C, D는 다시 위험조정을 선택 유무에 따라, A, B와 C, D로 나뉜다. 차례로 보면 옵션 A는 할인율을 IMF/WB의 5%로 낮추어 증여율을 계산한 뒤, 차관액과 증여율을 곱한 증여등가액만을 ODA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미 널리 사용 중인 IMF/WB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여국별로 상이한 자금조달비용과 수원국별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옵션 B는 OECD DDR을 할인율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OECD DDR은 공여국별로 산정되는 금리가 상이한 바, 옵션 A보다는 공여국별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수원국별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옵션 C는 IMF/WB의 5% 할인율에 위험프리미엄할인율(risk premium rate)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옵션 A, B의 단점인 수원국의 국별 위험을 위험미반영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MF/WB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할인율 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여국이 부담하는 조달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위험프리미엄할인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공여국별로 달라짐에 따라, 위험프리미엄할인율의 기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옵션 D는 OECD DDR을 고정할인율로

적용하고, 이에 위험프리미엄할인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차관을 제공받는 수원국의 고유위험을 위험프리미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옵션 C와 동일하게 위험프리미엄할인율의 기준을 선정해야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여러 논의를 거쳐 OECD/DAC은 지난 2014년 12월 옵션 C에 기초한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 도입을 결의하였다. 옵션 C와 같이 증여등가액방식을 채택하고 위험조정할인율을 반영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OECD/DAC은 옵션 E, F와 같이 최소증여율(threshold)을 설정하여, 최소증여율 이상의 증여율을 가진 차관에 대해서만 ODA차관으로 증여등가액이 계상되도록 하였다.

표 3. ODA차관 측정방식 변화

	현행	변경
측정방식	순지출방식(cash flows) 지출액-상환액	증여등가액 방식(Grant Equivalent) 지출액*증여율
최소증여율	일괄 25%	소득그룹별 차등 최소증여율 LDC/LIC : 45% LMIC: 15% UMIC: 10%
할인율	일괄 10% (위험조정할인율 고려 없음)	소득그룹별 차등 위험조정할인율 반영 LDC/LIC : 9%(IMF/WB 5%+4%) LMIC: 7%(IMF/WB 5%+2%) UMIC: 6%(IMF/WB 5%+1%)

출처 : OECD (2014g), 저자 정리

유상원조 측정방식의 첫번째 변화는 **할인율 조정**이다.¹⁴⁾ 기존 기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주어지는 차관 중 10% 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율¹⁵⁾이 25% 이상의 차관액은 그 전부를 ODA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4) 유상원조 측정방식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우용 (2015), “양허성 차관의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과 ODA변화,” 국제개발협력 2015. 제1호, 참고.

이러한 측정방식은 실제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ODA로 과다 계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의 낮은 시장이자율을 고려할 때 10%의 할인율은 공여국의 자본기회비용에 비하여 너무 높아서 차관의 양허성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OECD/DAC은 기존 유상원조의 양허성 측정방식인 일괄적인 10%의 할인율을 차관을 받는 개도국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그룹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한 차등할인율 적용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되는 할인율은 IMF 이자율 (현 5%)에 국가그룹별로 디폴트 위험을 감안한 위험조정율(risk-adjusted discount rate)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은 이자율 5%에 위험조정율 1%를 더한 6%, 저중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 LMIC)은 위험조정율 2%를 더한 7%,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및 기타저소득국(Other Low Income Countries, OLIC)은 4%의 위험조정율을 더한 9%의 새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두번째 변화는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의 도입**이다. 낮아진 할인율 적용으로 차관의 증여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자, OECD/DAC은 ODA로 계상될 수 있는 차관의 증여율 기준을 종전 일괄 25%에서 소득그룹별로 UMIC 10%, LMIC 15%, LDC 45%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은 증여율 기준 25%를 넘는 양허성 차관액 전부를 ODA로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차관의 증여등가액, 즉, 기준율을 넘는 차관 총액 중 무상원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ODA로 인정하게 되었다.

15) 증여율(Grant Element)란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된다. 증여율은 차관의 공여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금리가 낮을수록 상환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무상원조는 증여율이 100%이다. 증여율=(차관액면가액-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차관액면가액*100으로 계산하며,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위한 할인율이 종전은 일괄 10%이었으나, 금번에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3) 흐름(Flows)의 의미변화

흐름(flows)란 현금이나 서비스, 물자 형태의 자원의 이동(transfer)을 의미 한다. DAC통계는 개발영향이 있는 이전(transaction)을 ODA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차관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다. ODA 차관에 대한 원금 상환은 부(negative)의 흐름(flows)으로 계상되어 순 ODA금액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차관이 모두 상환되는 시점에서는 해당차관에 대한 순흐름(net flows)은 0이 된다. 이자는 기록되나, 순흐름 통계에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주식 투자(official equity investments)는 투자의 개발목적성에 따라 ODA로 보고가 능하나, 판매 시에는 구매자가 개도국에 있건 선진국에 있건 부의 흐름으로 계상 된다.

지출액(Disbursements)은 아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측정된다.

- 1) 약속어음형태로 지급된 다자개발은행과 기금에 대한 지원의 경우 어음액보다 두가 입금시점에 ODA로 보고된다.
- 2) 채무탕감을 위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실행을 위해 제공된 채무탕감액의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재조정 연도의 무상ODA로 보고된다.

4) 공여국내 지출 (in donor cost)

앞 절에서 설명한 흐름(flow)에 대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몇 활동은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이전(transfer)으로 보고되지 않음에도 ODA로 보고될 수 있다. 개발목적으로 공여국내의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용돈과 여비 포함), ODA프로그램을 위한 행정비용, 공여국내 NGO에

대한 지원, 공여국내 난민비용, 공여국내 개발인식증진비용은 모두 ODA로 보고된다. 단, 공여국내 자본투자는 흐름으로 계상되지 않아 ODA로 보고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발 관련 연구나 훈련 등을 위해서라도 시설 건설비용과 설비구매는 ODA에서 제외된다.¹⁶⁾

즉, 기존의 ODA 정의는 수원국으로의 자금의 이동을 측정하는 것을 설계되었으나, 이후 실제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을 포함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여국 내에서만 지출이 일어나기는 비용이지만, 난민, 유학생 지원 비용, 행정비용 등 공여국내 지출액도 ODA로 계상된 것이다. 그러나 공여국내 지출은 개도국 입장에서 가용할 수 없는 ‘유령원조 (phantom aid)’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Hynes, W. and S. Scott 2013), ODA 측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여국내 난민비용의 경우 현재 난민이 개도국에 도착한 후 첫 12개월 동안 지원된 금액의 경우 ODA로 계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수원국으로의 자금 이전이 없는 원조라는 측면에서 OD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개진하였고, 반대로 그리스는 12개월 이후의 비용도 ODA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OECD 2013a).

공여국내 유학생 지원비용(Imputed students' costs)은 공여국내의 대학에 유학 온 개도국 출신 학생의 학비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ODA로 계상하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ODA로 계상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NGO에서는 해당 지원금은 공여국내 지출비용이며, 개도국 출신 유학생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은 역량강화 비용이 아닌 개도국의 두뇌유출에 사용된

16) 단,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용(running cost)은 ODA로 계산된다.

것으로 귀결되므로, 더더욱 OD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동 비용의 계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여국내 수원국 아동의 학비까지도 포함되도록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OECD 2013a).

그러나 사무국은 이후 2014년 2월까지 DAC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 공여국내 비용을 ODA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한 요청은 저조하다는 점을 밝히며, 다만 공여국내 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DAC 통계보고지침의 구체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여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OECD 2014c). 이러한 회원국의 입장은 2014년 3월 DAC에서 개최된 고위관리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공여국내 비용과 관련하여 ODA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 논의는 오는 5월에 진행될 DAC 개발자원-통계작업반 공식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16년 2월에 개최될 HLM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제3장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의 도입 :

총공적개발지원(TOSSD)

1. 개념 및 특징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은 ODA를 넘어서는 개발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원 동원 극대화의 유인체계 제공 등을 위하여 광범위한 공적개발재원 측정 수단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TOSSD의 특징은 ODA의 목적인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리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이익(mutual benefit)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OECD (2014d)와 OECD (2014g)는 ‘TOSSD는 ODA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보충적인 측정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ODA 비율(ODA/GNI) 0.7% 공약은 달성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TOSSD의 도입이 상기 책무를 회피하는 사유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OSSD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최종 목표로 추진해야 하나 여타 활동 목표도 공존할 수 있으며 공여국이 해당 활동을 통해 수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합치해야 TOSSD로 적격하며, 양허성 조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TOSSD의 도입은 대중의 비판적 검토 대상이 되는 만큼, TOSSD 통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따라서 DAC 외부의 공여자들이 활용 가능한 보편적인 측정방식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회원국들 간에 공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OECD/DAC은 여러 회의를 통하여 TOSSD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정리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TOSSD의 최종 범주는 Post-2015 체제에서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어떻게 채택되느냐와 맞물려 있으므로, 2014년 HLM에서 DAC 회원국들은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개발재원 총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TOSSD의 구체적인 범주를 결정하고, Post-2015 개발목표 확정 이후 이를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조정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2014년까지 논의된 상황을 바탕으로 사무국이 제안한 TOSSD의 측정방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은 공여국에게 이익이 배당될 경우에도 TOSSD로 인식
-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구분하기 위해, 공적 지원으로 조성된 민간 재원은 memo item으로 표기하고, 활용된 공적 지원은 TOSSD로 계상
- TOSSD는 총액 기준(gross basis)으로 측정하되, 수원국 입장에서도 개발재원 조성 현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지출 통계(data on a net basis)도 수집
- TOSSD 하에서 모든 목표·부문·분야가 최종 SDGs 체제 및 개도국의 개별 개발 전략과 합치해야 할 것
- TOSSD는 ODA, OOF 및 기존 DAC 통계가 측정하지 않는 SDGs 달성을 위한 추가 자원흐름을 포함
- (TOSSD-ODA 관계)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도입으로 TOSSD와 ODA는 서로 다른 양적 통계로 존재, TOSSD는 자금흐름(cash flow) 기준으로 보고

또한 TOSSD의 분류 및 보고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4.3월 개최된 DAC SLM에서 TOSSD 개념 도입과 보고가 글로벌 위기 대응 및 개발의 촉진(enablers of development)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하였다. 또한, 공적 자금과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조성된 자금을 위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지적이 있었으며, TOSSD에는 공적 자금 흐름만 포함하고 관련 민간 자금은 별도 항목(memo item)으로 표기하는 방안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DAC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사무국은 2014년 6월 TOSSD의 범위 및 포함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을 정리하면, 향후 TOSSD는 크게 5가지 요소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OECD 201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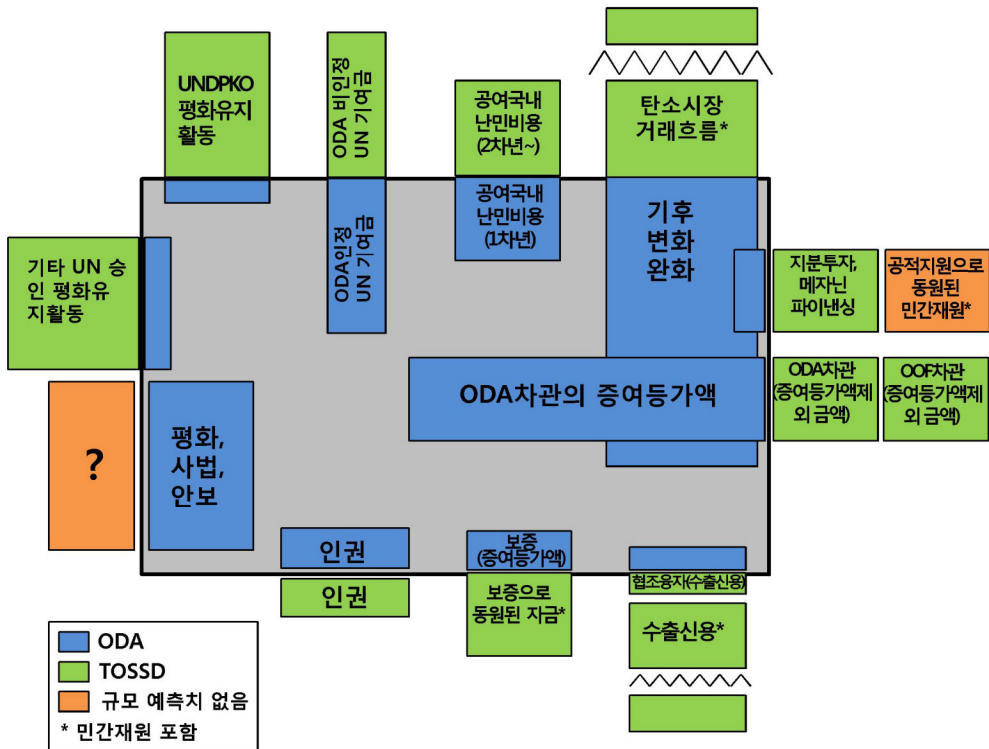
- 평화, 안보, 인권 등 개발의 촉진제 (Enablers for development)
- 시장금융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을 사용한 지원
-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TOSSD 메모 아이템으로 표기)
-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TOSSD 메모 아이템으로 표기)
- 행정성 경비 (TOSSD administrative costs)

2. 주요 이슈

TOSSD 주요 쟁점은 평화·안보·정의 등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development enabler)에 대한 측정의 외연(outer boundary) 설정, 공적자금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반영 여부와 방식, 기후금융(climate finance) 관련 국제적 목표와의 조화로운 보고체계 유지 등이다.

OECD 사무국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TOSSD의 요소를 ODA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도식화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파란색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ODA이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TOSSD로 포함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도식화된 상자의 크기가 관련 재원의 규모를 반영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림 3. 개발재원의 분류



출처 : OECD (2014c), p.11.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서 말한 5개의 TOSSD요소와 관련한 현재 논의사항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화, 안보, 인권 등 개발의 촉진제 (Enablers for development)

(1) 안보와 정의 관련 TOSSD

앞 장에서 평화와 안보관련 ODA 재정의 논의와 TOSSD의 논의는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바 있다. 예를 들어 대테러리즘 활동은 수원국보다는 공여국 위협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되어 현행 기준에서는 ODA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의 특정지역에 위협이 되는 테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에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대테러활동은 ODA로 계상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활동이 ODA로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동 활동을 TOSSD로 인정할지의 여부가 논의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찰 훈련(Police training)과 관련된 논의의 경우에는, 현행 DAC 통계 보고지침에서는 경찰훈련에 지원된 비용 중 정치적 폭력사태와 관련된 지원은 ODA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 및 관련 연구에서 정치적 폭력사태와 비정치적 폭력사태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두 사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비정치적 그룹 둘 다 인신매매, 납치, 아동성매매 등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동 정의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치적 단체에 의한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찰 훈련 등 ODA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을 TOSSD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OECD 2014b).

이렇듯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평화와 안보관련 ODA 정의 구체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DAC 통계보고지침 및 사례집의 해석기준안으로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의 TOSSD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사항은 없으나, 회원국은 안보와 정의 관련 TOSSD의

범주를 결정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OECD 2014f).

안보와 정의 분야 TOSSD (TOSSD for security and justice)

- 안보와 정의 분야 TOSSD는 개도국의 평화 촉진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활동과 일치되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인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평화구축, 국가구축 목표 또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의 달성 목표를 지지하는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안보와 정의 분야 TOSSD는 개도국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구축을 촉진시켜야하며, 공여국의 정책 목표 달성이 아닌 수원국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 TOSSD는 경찰, 군인, 시민 등 모든 주체가 활동 실시기관이 될 수 있으나, 치명적 살상무기의 제공을 TOSSD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평화유지활동 관련 TOSSD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활동은 양자와 다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양자 지원을 통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경우, DAC 통계보고지침은 양자사업으로 실시된 국제평화유지활동 중 ODA로 인정되는 사업은 UN,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의 국제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국한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OECD 2013c). 또한 양자사업의 비용은 특정 기계 또는 사람이 해당 평화유지활동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 소요되었을 일반적인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ODA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DAC 회원국이 이 유형으로 지원한 ODA 총액은 310만 달러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현재 군 파병비용(military contingents) 등의 금액은 ODA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평화와 안보 관련 양자사업 중 Non-ODA 금액을 TOSSD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현재 동 비용들은 OOF에서도 제외되어, “total participation in peacebuilding operations (including non-ODA)”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군 인사에게 지급되는 연봉 및 기타 비용(regular salaries and expenses of military personnel)을 현행처럼 통계 수집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OOF로 보고되고 있는 군부채탕감(forgiveness of military debt)을 TOSSD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문의하였다(OECD 2014b).

한편, 다자기구를 통한 평화유지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ODA로 인정받지 못하는 UNDPKO 평화유지 활동 중 군사장비 및 서비스 관련 자금 지원을 TOSSD로 인정할 것인가의 이슈가 대두되었고, ODA적격계상률(현행 7%)의 적용으로 인해 ODA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TOSSD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개진되었다(OECD 2014b).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원국과 사무국은 TOSSD의 도입이 ODA로 인정되지 않던 평화와 안보 분야 사업 지원을 포괄하여 공여국의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관련 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OECD 회원국 중에는 평화, 안보, 인권관련 지원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이라는 개발목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TOSSD의 인정 범위 확대에 우려도 표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UNDPKO를 통한 지원과 기타 UN이 승인한 활동만을 TOSSD에 포함시키는 적격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OECD 2014b),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의 TOSSD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OECD 2014f).

평화유지활동 관련 TOSSD (TOSSD for peacekeeping)

- DPKO와 기타 UN이 승인한 평화유지활동에 지원된 평화유지활동 전액은 TOSSD로 계상한다. 살상무기의 제공과 관련된 비용의 포함여부는 TOSSD의 일반원칙이 도입되면, 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인권 관련 TOSSD

개도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은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ODA로 분류된다. 즉,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기구의 경우 사법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지원액 전액이 ODA로 인정되게 된다. 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기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인권말살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은 일부 또는 전부가 ODA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실례를 살펴보면, UNHCR의 ODA적격계상률(coefficient)은 64%로, UNHCR 내의 사무소 ‘운영 및 기술협력(field operations and technical assistance)’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권리(research and right to development)’ 부서의 활동만이 ODA로 인정을 받은 결과이다. 인권조약(human rights treaties) 및 특수절차(special procedures) 부서의 활동은 개발목적의 직접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ODA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36%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4b).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인권과 법치주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 개선을 통해 법치주의 및 평화,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 지원을 TOSSD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OECD 2014b). 상기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사무국이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다(OECD 2014f).

인권 관련 TOSSD (TOSSD for human rights)

- 인권관련 기구에 지원된 금액의 경우, 수원국에 직접 혜택이 귀속되는 활동에 지원된 금액만 ODA로 인정하는 기존의 계상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금액은 TOSSD로 계상한다.

(4) 공여국내 난민비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공여국내 난민 비용의 경우, 첫째 지원 금액만이 ODA로 계상되고 있다. 이에 사무국은 공여국내 난민비용은 유령원조라는 이유를 근거로, 1차년도 지원액도 ODA에서 제외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TOSSD로 계상하자는 안과, 1차년도 지원액은 ODA로 계상하되,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TOSSD로 계상하자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다(OECD 2014b). 회원국의 의견 및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국이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다.

공여국내 난민비용 관련 TOSSD (TOSSD coverage of in-donor refugee costs)

- 수원국 출신 난민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모두 TOSSD로 계상한다.
- 모든 종류의 난민을 모두 인정한다(현재 일부 회원국은 ODA보고에 망명 승

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망명신청자만 ODA로 보고하거나, 다른 국가는 망명이 승인된 신청자의 비용만을 인정하거나, 망명 신청이 거절된 망명신청자는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 모든 종류의 지출을 인정한다(현행에서 ODA로 인정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정착 지원비용, 행정성 경비, 경찰 경비, 훈련 경비 등).
- 첫 1년 이후의 비용도 인정한다.

(5) 글로벌 공공재: 국제적 기준 수립 국제기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Standard-sett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s)¹⁷⁾의 경우, 해당 기구의 사업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나 규칙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 수립 등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활동을 TOSSD로 계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다(OECD 2014b). 그 결과, 사무국은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액 전액을 TOSSD로 계상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OECD 2014f).

17) OECD는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Standard-sett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s)를 ‘agencies with a global mandate and normative functions’라고 부가 설명하고 있으며, ILO, WHO, IAEA를 예시로 들고 있다.

2)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을 사용한 지원

(1) 복합금융 및 수출신용

현재 DAC 통계에서는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s)은 OOF로, 공공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이 동반된 민간수출신용(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민간재원 흐름(private flows)로 보고되고 있다.¹⁸⁾ 한편, OECD/DAC 사무국은 앞장에서 설명한 혼합금융패키지(Associated financing package) 중 수출신용 부분을 향후에는 TOSSD로 포함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모든 수출신용 지원을 TOSSD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다(OECD 2014b).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사항을 보면 복합금융 및 수출신용(Associated financing and export credits)의 비양허정 요소는 TOSSD로 보고하고, 수출신용 중에서 복합금융 패키지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에서 제공된 수출신용은 TOSSD에서 제외하는 안을 2014년 말에 회람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OECD 2014f). 한편, TOSSD에 대한 기존 OECD 규정 적용 여부는 TOSSD 범주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grants와 loans 외의 금융수단의 WTO 보조금 협정 합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2) 시장유사수단 관련 TOSSD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은 개도국 공공분야 및 기

18) OECD DAC 통계보고지침은 수출신용은 사업적 목적의 차관제공의 한 형태이며, 차관공여국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업목적의 공적차관(Official loans)은 OOF로 분류되며, 공적수출신용금융(Official export credit financing)은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민간수출신용(Private export credit transaction)은 민간에서 마련한 재원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보험 또는 보증을 통해주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민간재원의 흐름(private flows)로 보고된다. (상세내용은 OECD DAC 통계보고지침 (OECD (2013c), p.10 참조)

업에 제공된 차관(Loans), 보증(Guarantees),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 지분투자(Equity)를 일컫는 표현이다.¹⁹⁾ 다음의 표는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시장유사수단의 개념을 정리한 표이다.

표 4.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 개념

보증(Guarantees), 보험(Insurance)	- 보장 또는 보험은 투자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 시장 또는 민간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메자닌 금융 (Mezzanine finance)	- 메자닌 금융은 하이브리드 금융이라고 불리며, 대출(Debt)과 투자(Equity) 금융이 결합되어 있는 중간적인 성격의 금융상품을 말함. -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외에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주식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와 같은 ‘성공보수’를 부여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광의로 보면 ‘선순위부채(senior debt)’와 ‘자본(equity)’ 사이에 존재하는 혼합형태의 금융을 의미하여, 후순위부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지분투자(Equity)	- 지분투자는 민간부분 개발에 관련이 높으며, 공공부문에서 지분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감소시켜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를 일컫음. - 보통주(common equity) 투자, 집합투자(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이익재투자(reinvested earnings)가 포함.

출처 : OECD (2014i)

2014년 12월 개최된 HLM에서 민간금융수단 활용이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며, 동 수단의 ODA 측정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동 수단을 주로 운용하는

19)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s)과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OECD 사무국은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s)은 개도국 기업에게 제공된 자원만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 개도국 민간과 공공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지원이 이뤄진 자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차이를 밝히고 있다(OECD (2014h)).

양자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에 대한 ODA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한 상태이다.

특히, 동 수단의 TOSSD로의 측정과 관련하여서 사무국은 지분투자과 메자닌 금융(Equity and Mezzanine finance)은 총지출액으로 TOSSD를 보고를 통해, 지분투자과 메자닌 금융의 투자효과를 가치화하여 보고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목적 차관(Capital of developmental loans)은 ODA 차관의 양허성 관련 논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TOSSD에서는 수원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된 개발목적의 차관의 액면가를 보고하기로 하는 것으로 회원국 및 사무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증/보험(Donor efforts of guarantees and other risk mitigation instruments)과 관련하여, 보증은 개도국으로의 자금 이전이 발생하는 흐름(flow)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에는 DAC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증이 실행되어 지급된 경우,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이 동원되게 되는데 소요된 공여국 정부의 노력, 보증인이 감수한 위험, 보증기간에 대한 양허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보고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비중여 원조수단의 보고형식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이들 노력을 TOSSD 또는 ODA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OECD 2014f).

시장유사수단의 ODA측정방식은 2015년 중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차기 HLM에서 측정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수단의 TOSSD 보고방식 역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3)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TOSSD 측정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측정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자원 전체를 TOSSD로 계상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 동원을 위해 시장유사수단으로 사용된 공적재원은 ODA로 계상하고, 이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은 TOSSD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이 경우, 보증은 공적자원과 이에 의해 동원된 민간자금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계상이 가능하나, 지분투자, 메자닌 금융 등의 방식을 통해 동원된 자금의 경우 분리계상 가능성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OECD 2014c).

제982차 DAC회의에서 동 안전에 대해 회원국 간의 의견이 양분되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은 민간자금의 경우 TOSSD가 아니라 메모 아이টেम्으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OECD 2014d). 따라서 현재 사무국이 TOSSD에 보고방식에 대해 회람한 문건에서도 TOSSD는 메모 아이টেम्으로 기입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동 부분은 향후에도 메모 아이টেम्으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4) 기후변화 관련 TOSSD의 측정

지난 2010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조성하여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성될 다양한 종류의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후재원 사용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후재원의 흐름 및 사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통계적 보고 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TOSSD 도입은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탄소 배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TOSSD의 논의는 UNFCCC의 기후재원 사용 노력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이미 기존의 DAC 통계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마커를 통해 추적 및 보고가 가능하며, 관련 프로젝트 펀드 역시 이미 DAC통계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DAC에 보고되고 있는 ODA는, 2011-12년 1년간 기후변화 관련 ODA 지원액이 총 19.3십억 달러로, 양자 ODA 약정액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DAC 사무국은 밝히고 있다(OECD 2014b).

현재 기후변화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TOSSD 이슈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첫째, 보증,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기후변화 재원까지를 포괄하여 측정, 보고 가능하도록 TOSSD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이다. 보증보험 등의 금융수단을 DAC의 통계로 반영할 경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한 공여국의 폭넓은 지원의 측정과 모니터링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초기단계의 기술개발²⁰⁾ 등 기존의 ODA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후변화 사업으로 TOSSD에

20) DAC 사무국은 CCS와 초기단계 기술개발 사업 등은 현재 ODA와 OOF 둘 다 포함되지 않으나(beyond ODA and OOF), 개도국에서 효율적인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포함할 것인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DAC 통계보고지침상의 정의에 의하면, CCS 등의 초기단계 기후변화 완화 기술은 주목적이 개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ODA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활동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 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의 공급 활동이라는 점에서, TOSSD에는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OECD 2014b).

셋째, 재생에너지처럼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수출 신용(export credits)을 통해 프로젝트 기금이 마련되었을 경우, 이를 TOSSD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수출신용으로 지원한 사업도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점 등 고려 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TOSSD 외연설정 논의는 수출신용의 처리방식과 연계되어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수출신용(export credits)과 민간자금 흐름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다(OECD 2014b).

한편, 지난 2004년 OECD 사무국은 CDM사업을 ODA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ODA로 인정되게 되었는데, 다만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실시한 CDM사업으로 탄소배출거래권을 획득하게 될 경우,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ODA 통계에서 상환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CDM 이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탄소권거래 시장 및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ODA로 인정되지 않는 탄소거래시장의 자금흐름의 경우 TOSSD로 인정하여 계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OECD 2014b). 또한 증여등가액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ODA에서 상환액으로 보고하던 CDM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상기 이슈가 주요 논의사항이라는 점은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TOSSD의 보고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4년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원은 TOSSD 메모 아이템(TOSSD memo item – Global Public Good including elements of Combatting Climate Change)’으로 보고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행정성 경비 관련 TOSSD의 측정

행정성 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외교인력 파견비용의 TOSSD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행정성 경비 항목에 다른 항목으로 보고되지 않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다. 원조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DAC 수원국으로 파견된 외교 인력의 경우, 파견 비용이 ODA로 보고되지만, 개도국의 경제 성장 및 복지향상이 담당업무의 주목적이 아닌 대사관 직원의 경우 ODA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비용 등은 주목적이 개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ODA로는 계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인력 파견 비용 중 파견 인력이 평화와 안보 분야 등 개발의 선제조건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TOSSD 포함여부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비용의 간접적인 개발목적성을 인정하여 TOSSD로는 계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OECD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앞서 언급된 두 비용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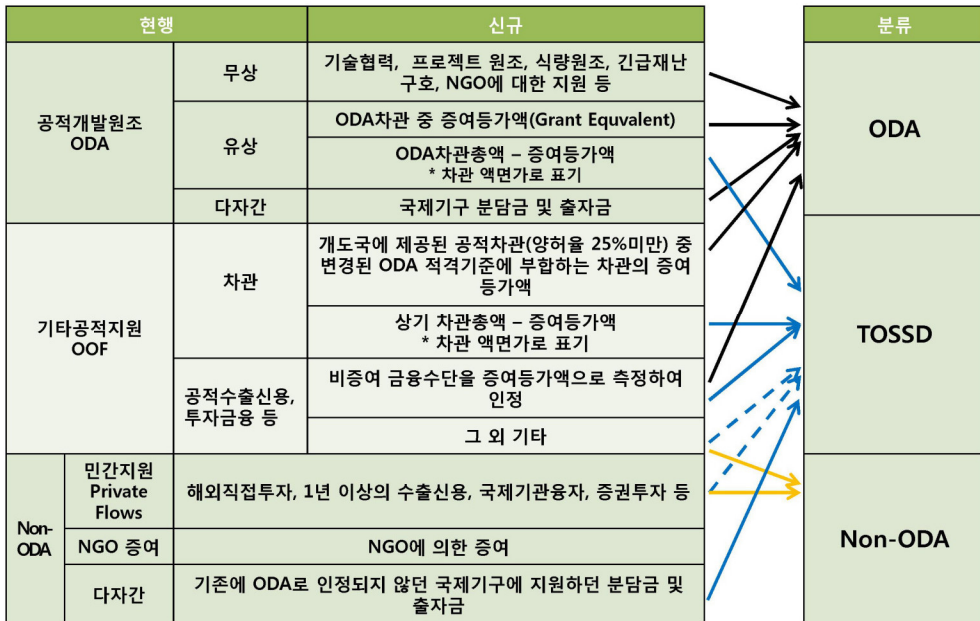
TOSSD로 포함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OECD 2014f).

한편,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 중 ODA 적격 계상률 적용으로 인해 ODA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도 TOSSD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자지원의 경우 지원액 전체를 TOSSD로 보고하는 방안이 사무국과 회원국 사이에 언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사항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제4장 ODA 정의 변화 및 TOSSD도입에 대한 논의 분석 및 대응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허성 측정 방식 변경 및 TOSSD 도입시의 개발재원을 재분류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유상원조의 경우 증여등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ODA로 보고 계상될 예정이다. ODA차관의 총액에서 증여등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ODA로는 보고되지 않으나, 차관의 총액(액면가)이 TOSSD로 보고된다는 점에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메자닌 금융, 보증, 보험 등 민간금융수단을 통해 지원된 금액도 TOSSD로 보고되는 점,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도 TOSSD의 메모아이템으로 보고된다는 점,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과 기존 다자기구 지원액 중 ODA적격계상률을 적용하여 ODA로 보고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TOSSD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4. 개발재원의 재분류



출처 : 저자작성

이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ODA의 재정의 및 TOSSD의 도입 논의를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발재원의 정확한 규모 파악으로 원조효과성 개선

TOSSD 신설은 ODA이외에 폭넓은 공적개발재원이 존재하는 국제개발 현실을 DAC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DAC 회원국 외에 다양한 공여자들의 공적 개발 정보 축진에 기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TOSSD 도입으로 ODA를 넘어서 포괄적인 개발재원의 전체 규모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조효과성 및 예측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되며, 더 나아가 개도국으로의 유입된 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으로 하여금 국가계획이나 재정운영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폭 넓은 개발재원 측정 체제로서의 TOSSD의 성공적 운용은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외의 공여국,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통계 보고 여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와 성실한 통계 보고가 중요하다.

2. TOSSD 도입으로 인한 ODA 지원의 실질적 감소 우려

TOSSD의 도입으로 폭넓은 개발재원을 파악,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로 인해 ODA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대응책으로 DAC 사무국은 TOSSD는 ODA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TOSSD의 도입으로 ODA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ODA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지원의 대부분이 TOSSD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통계상으로는 포괄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TOSSD의 개념도입을 통해 개발관련재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최빈국에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 가능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여국 입장에서는 민간재원의 활용이 가능한 TOSSD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ODA 재원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DA 지원액 감소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ODA차관이나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한 지원보다는 ODA 재원의 필요성이 높은 최빈국에게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3. TOSSD 구체화를 위한 상세기준의 논의 시급

DAC 사무국은 TOSSD 논의를 올해(2015년) 안으로 마무리하여, 내년 2월에

개최예정인 DAC 고위급회의(HLM)에서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승인을 받는 일정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방식이나 보고 대상의 범위 등의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TOSSD 도입 시 기존에는 ODA로 계상되지 않던 기후변화 지원도 TOSSD에는 포함이 되어 보고될 수 있는바, 상업지원, 선진국지원 등 개도국 발전과 관련이 적은 지원도 포함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성격을 가진 기후변화 관련 지원(예시, 탄소포집저장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기존에 통계보고방식에서는 ODA로 보고되지 못하나, TOSSD로는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관련 지원의 경우, 지원으로 인한 혜택을 개도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사항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수출신용을 TOSSD로 인정할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연관성이 희박한 상업적 지원도 포함되어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관련 재원 중 순수하게 상업목적의 재원과 개발목적이 포함된 재원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 관련 TOSSD의 외연과 TOSSD 메모아이템으로 표기될 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는 한 기준 수립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된 자금도 TOSSD로 계상되는데, 다자기구의 활동이 개도국과 선진국에게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공여국의 지원액 전체를 TOSSD를 계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자기구의 어떠한 활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개발과 관련이 미미한 기구에 대한 지원도 TOSSD도 포함되어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공공재로써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ILO, WHO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업비를 TOSSD로 인정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아닌, 계상률 100%로 TOSSD로 보고할 구체적인 국제기구 리스트를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하여 논의가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기구를 특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원액 전체를 TOSSD로 인정할 경우, 공여국 및 다자기구 내 행정비용도 포함되어 TOSSD가 과다 계상된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하는 TOSSD의 목적에서 부합하지 않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밖에도 현재 OOF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OSSD 도입으로 OOF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공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TOSSD 논의를 구체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빠른 상세기준 마련을 통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ODA 정의 변화로 인한 최빈국이나 취약국의 개발자원 감소 우려

OECD/DAC는 이번 양허성 차관 기준 재선정과 ODA재정의 논의의 근거를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제적인 변화에 맞춘 현대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그러나 현재 차관이나 민간투자는 최빈국이나 취약국보다는 중, 고소득그룹의 개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그룹별로 최저증여율 기준을 두었다하더라도, 동 기준만을 맞추며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중, 고소득국으로 ODA마저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우려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ODA는 주로 중, 고소득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이나 취약국가에서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LDC에서 ODA가 조세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UN-OHRLLS, 2014), 이러한 ODA 증대 둔화는 기후변화나 분쟁 등의 위기에 취약한 최빈국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표 5. 소득그룹별 ODA흐름

	2000-07	2008-11	2012-16 ¹
Fragile LDC	10%	6%	0%
Non-fragile LDCs	4%	4%	-1%
Other fragile	10%	4%	2%
Mostly LMICs	1%	8%	3%
Mostly LMICs	1%	3%	1%

1. CPA estimates based on the 2013 Survey on Donors' Forward Spending Plans
출처 : OECD, 2013 p.16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OECD/DAC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GNI의 0.15-0.2%가 되어야한다는 합의를 상기시켰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공여국의 수가 적으며,²¹⁾ 이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최빈개도국과 취약국에 대한 지원감소나 정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양허성 측정 기준 변화에 대해 기술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측정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각 공여국별 ODA금액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이기는 하나, 이는 현재 지속적으로 ODA 증대 요구를 받아오던 공여국들이 부가적인 노력 없이 ODA를 증대했다는 착시효과를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21) 2012년도에는 7개 국가만이 GNI대비 0.15%이상의 ODA를 LDC에 제공함. 이는 2011년도의 9개국에서 2개국이 줄어든 숫자임.

제5장 한국개발원조에 주는 영향

무상원조 관련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신흥공여국에게 불리하다. 특히, 개도국장 학금프로그램과 개발인식증진을 제외하는 논의는 ODA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은 신흥공여국에게 특히 불리하며,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민간기부금 포함은 기존공여국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논의에서 공여국들의 저조한 참여와 반대로 개발인식증진 등 공여국내비용을 ODA에서 제외하는 논의는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여국내비용에 대한 비판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TOSSD가 도입되며 향후 동 비용이 ODA가 아닌 TOSSD로만 계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흥공여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러한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된 ODA 정의 현대화 논의와 TOSSD의 도입이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1. 무, 유상원조 비율 변화 및 유상원조 금액 증가

양허성 측정방식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등가액방식으로 계산한 경우, 약정액 기준으로 양자ODA금액은 감소한다. 그러나 순지출액과 비교하는 경우는 ODA금액이 증가하는데 이는 증여등가액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과 상환액의 차이가 아닌 약정액과 증여율을 곱하여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유상차관 측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여국은 ODA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적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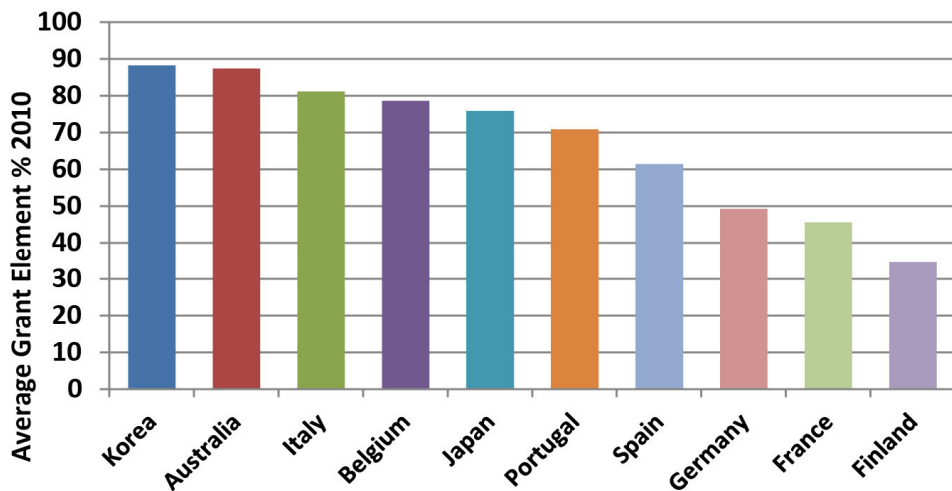
표 6. 증여치 도입과 주요 차관공여국의 양자 ODA변화 (2012년) (백만불, %)

	양자ODA(A) (약정기준)	유상ODA (양자)	양자증여율 (10%할인율)	양자ODA(B) (증여등가액)	증감 (A-B)	양자ODA(C) (순지출기준)	증감 (B-C)	증감비율 (B-C)/(C)
호주	4,662	43	80.6	4,654	-8	4,550	104	2.29%
벨기에	1,343	38	83.3	1,337	-6	1,433	-96	-6.70%
프랑스	11,399	5,784	47.6	8,368	-3,031	7,928	440	5.55%
독일	12,253	3,873	45.6	10,146	-2,107	8,584	1,562	18.20%
이태리	852	224	91.6	833	-19	624	209	33.49%
일본	17,270	10,304	75.9	14,787	-2,483	6,402	8,385	130.97%
한국	1,753	1,111	87.9	1,619	-134	1,183	436	36.86%
포르투갈	402	281	65.1	304	-98	397	-93	-23.43%
DAC	105,092	22,472	64.2	97,047	-8,045	88,574	8,473	9.57%

출처 : 정우용, 2015와 stat.oecd.org 통계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 EDCF차관의 금리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이러한 유상원 조액 증대 효과가 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평균 증여율은 OECD회원국 중 1 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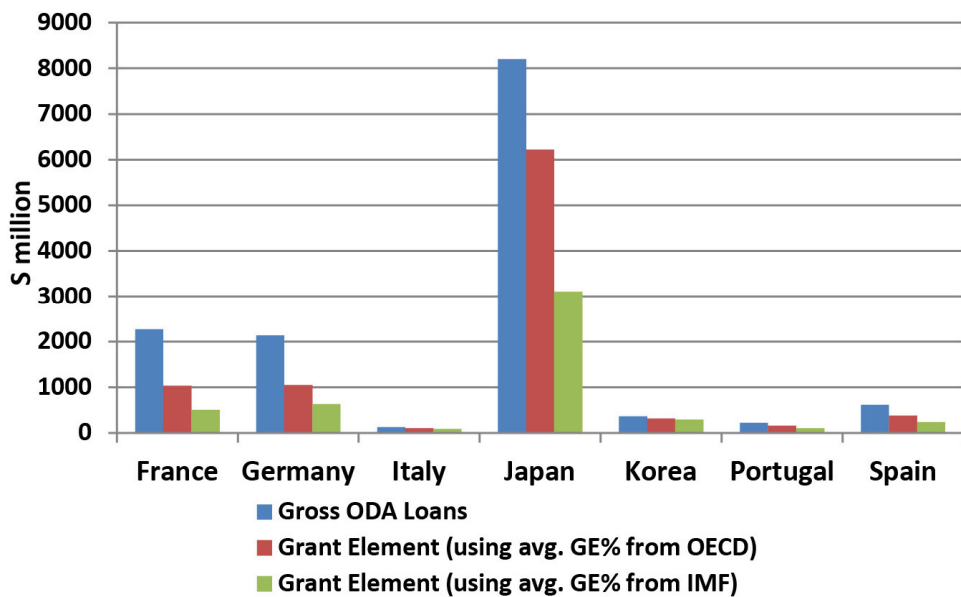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공여국별 ODA차관 평균 증여율



출처 : Tew, 2013. p.5

이러한 높은 증여율에 의한 효과는 아래 그림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은 현재 유상원조금액, 붉은색은 그 중 현재 OECD의 유상원조 측정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등가액, 마지막 초록색은 향후 변경예정인 IMF의 5%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등가액이다. 현재 유상원조액에 비해서 절반이상의 지원이 감액되는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높은 증여율로 인해 감액되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 할인율 변화에 따른 주요 공여국별 양자 ODA차관 증여율 (2010)



출처 : Tew, 2013. p.6

특히, 우리나라는 OOF금액도 많아, 변경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OOF로 분류되던 EDCF차관 중 많은 부분이 ODA로 인정되어 이런 증대효과가 타 공여국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표가 보여주듯 증여등가액방식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DAC평균 증대비율이 9.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36.9%의 증가율을 보인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OF는 대부분이 차관이다. 또한, 아래 표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OOF액수는 2013년도 기준으로 ODA대비 75%나 차지하고 있어서, DAC회원국 중 비중이 최고이며 이로 인해 ODA와 OOF를 합산한 경우, 우리나라의 DAC회원국내 원조순위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가게 된다(표 00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상/유상원조 비율이 OECD회원국 중 최저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상원조의 증가는 무/유상 비율을 악화시켜 원조의 질을 측정하는 DAC 동료심사나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등 다른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원조효과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7. 2013년도 OECD/DAC 회원국별 OOF합산 효과

(단위, 백만불/ %)

국가	ODA	ODA/GNI	OOF	ODA+OOF	ODA순위	OOF 포함순위	OOF/ODA
미국	30879	0.18	1427.01	32306	1	1	5%
영국	17920	0.71	186.58	18107	2	2	1%
독일	14228	0.38	-366.13	13862	3	3	-3%
일본	11582	0.23	1285.91	12868	4	4	11%
프랑스	11342	0.41	670.76	12013	5	5	6%
캐나다	4947	0.27	1135.96	6083	9	6	23%
스웨덴	5827	1.01	-23.35	5804	6	7	0%
노르웨이	5581	1.07	0.22	5582	7	8	0%
네덜란드	5435	0.67	..	5435	8	9	
호주	4846	0.33	467.22	5313	10	10	10%
이탈리아	3407	0.17	160.9	3568	11	11	5%
스위스	3197	0.47	..	3197	12	12	
한국	1755	0.13	1315.23	3071	16	13	75%

국가	ODA	ODA/GNI	OOF	ODA+OOF	ODA순위	OOF 포함순위	OOF/ODA
덴마크	2927	0.85	112.7	3040	13	14	4%
스페인	2375	0.17	140.92	2515	14	15	6%
벨기에	2300	0.45	76.4	2376	15	16	3%
오스트리아	1171	0.27	453.49	1625	18	17	39%
핀란드	1435	0.54	-30.89	1404	17	18	-2%
아일랜드	846	0.46	..	846	19	19	
포르투갈	488	0.23	2.95	491	20	20	1%
폴란드	472	0.10	..	472	21	21	
뉴질랜드	457	0.26	11.1	468	22	22	2%
룩셈부르크	429	1.00	..	429	23	23	
그리스	239	0.10	..	239	24	24	
체코	211	0.11	..	211	25	25	
슬로바키아	86	0.09	..	86	26	26	
슬로베니아	62	0.13	..	62	27	27	
아이슬란드	35	0.25	..	35	28	28	

출처 : stat.oecd.org table 01e와 Other official flows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혁신적 개발자원 등 새로운 사업형태 및 방식 도입 필요성 증대

ODA정의의 현대화와 TOSSD의 도입은 모두 기존 ODA의 한계를 반영한 개선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양허성 기준을 현실화하고, 변화된 개발협력현황에 맞추어 ODA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ODA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를 보다 원활히 공급하고, 민간의 사업방식과 보다 많은 재원을 공적자금과 결합하여 개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ODA사업형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ODA사업을 현대화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개발협력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부담 증대

TOSSD의 도입으로 글로벌 공공재 (기후변화, UN평화유지군 관련 비용)등 기존에 ODA로 보고되지 않던 자원들이 개발자원 인정되어 보고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자원 공여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²²⁾ 그러나 ODA는 증여등가액으로 보고 및 측정하고, TOSSD는 총지출방식으로 집계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여국은 기존의 보고방식에 추가로 증여등가액을 보고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자원, 기후변화, 수출신용 등 TOSSD의 보고범위가 넓어, 통계 정보를 제공, 보고해야하는 주체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의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행 ODA 실적보고시스템과 같이 TOSSD도 범정부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 및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 실무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ODA의 정책 및 집행체계가 분절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차원에서 TOSSD를 수집, 관리, 보고할 기관의 선정 등 실무차원의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2014년 기준 한국의 UN 의무분담금은 총 2,285억원으로 이중 605억원(28억불)이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1,680억원(78억불)이 PKO 예산 분담금으로 집행되었다. 현재는 UNDPKO에 지원된 분담금 중 ODA적격계상률(7%)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ODA로 인정되나, TOSSD 도입으로 나머지 93%의 분담금도 개발자원 공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계상되어 측정 받을 수 있다.

제6장 결론

ODA정의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별 ODA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논의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ECD/DAC 회원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우리원조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ODA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OECD의 협의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새로이 개정된 증여율 산정방식 적용으로 각 공여국별 ODA총액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ODA총액 증대 관련 국제적인 목표인 ODA/GNI 0.7%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변화에 맞춰 ODA 증대 목표 달성방안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상원조액 증대에 따른 원조의 질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사업방식의 현대화 및 사업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우용 (2015), “양허성 차관의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과 ODA변화.” 국제개발협력 2015. 제1호.
- 정지원·권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hushan, A., Samy, Y and Kemi Medu (2013) Financ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in Africa. New York:
- KOICA (2012)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 통계가이드라인.
- Greenhill, R and Ahmed Ali (2013) What Happens Now?—The Post-2015 Agenda After the High-Level Panel. The North-South Institute. at <http://www.nsi-ins.ca/wp-content/uploads/2013/09/2013-Financing-the-Post-2015-Africa.pdf> 접속일 2015.4.2.
- Hynes, W. and S. Scott (2013), “The Evol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hievements, Criticisms and a Way Forwar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1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3v1dv3f024-en>
- OECD (2008) Is it ODA?, Factsheet – November 2008.
- OECD (2012a) Explanation of Concept Used in Concessionality and Grant Element Calculations, DCD/DAC/STAT(2012)18/REV1.
- OECD (2012b) “Proposal for Clarification of Concessional in Character.”, DCD/DAC/STAT(2012)22
- OECD (2013a) Revisiting the ODA concept, Expert Reference Group Meeting, 3-4 October 2013.
- OECD (2013b) REVISION OF THE ODA COEFFICIENT FOR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UNDPKO), DCD/DAC/STAT/RD(2013)1/RD6.

- OECD (2013c)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DCD/DAC(2013)15/FINAL.
- OECD (2013d)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Addendum 2, DCD/DAC(2013)15/ADD2/FINAL, at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CD–DAC\(2013\)15–ADD2–FINAL–ENG.pdf#page=5](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CD–DAC(2013)15–ADD2–FINAL–ENG.pdf#page=5) 접속일 2014.12.21
- OECD (2013e) "The Where" of Development Finance, DCD/DAC(2013)29, at <http://www.oecd.org/dac/externalfinancingfordevelopment/documentupload/Where%20paper.pdf> 접속일 2015.4.3
- OECD (2014a) ADDRESSING THE BOUNDARY BETWEEN ODA AND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TOSD) IN THE FIELD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DCD/DAC(2014)34.
- OECD (2014b) POSSIBLE NEW MEASURE OF TOTAL SUPPORT FOR DEVELOPMENT: Options Regarding Peace and Security, Climate Change and Global Programmes, DCD/DAC(2014)7.
- OECD (2014c) MODERNISING THE DAC'S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DCD/DAC(2014)9.
- OECD (2014d) SUMMARY RECORD OF THE 982nd DAC MEETING, DCD/DAC/M(2014)7/FINAL.
- OECD (2014e) STOCK-TAKE OF MEMBERS' POSITIONS ON THE CURRENT BOUNDARIES OF ODA WITHIN THE FIELD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DCD/DAC(2014)41.
- OECD (2014f) SCOPING THE NEW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TOSD), DCD/DAC(2014)35
- OECD (2014g) FINAL COMMUNIQUÉ OF THE 2014 DAC HIGH LEVEL MEETING, DCD/DAC(2014)69/FINAL.
- OECD (2014h) DAC HLM BACKGROUND PAPER – INCLUDING THE COST OF USING PRIVATE–SECTOR INSTRUMENTS IN ODA, DCD/DAC(2014)64.

- OECD (2014i) DEVELOPMENT FINANCE: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 AN EMERGING CONCEPT IN SUPPORT OF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CD/DAC(2014)48.
- OECD (2014j) OPTIONS ON CONCESSIONALITY, DCD/DAC(2014)29
- OECD (2014k) Background paper: The treatment of loan concessionality in DAC statistics at
[<http://www.oecd.org/dac/DAC%20HLM2014%20Background%20paper%20The%20treatment%20of%20loan%20concessionality%20in%20DAC%20statistics.pdf>] 접속일 2015.3.31
- OECD (2015) JOINT INCAF/WP-STAT TASK TEAM ON BOUNDARIES OF ODA IN THE FIELD OF PEACE AND SECURITY, DCD/DAC/STAT(2015)1.
- Roodman (2014) Straightening the Measuring Stick: A 14-Point Plan for Reforming the Defini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ashington DC. CDI.
- Tew, R (2013) ODA Loans--Investments to End Poverty Discussion Paper, Development Initiatives, at
<http://www.devinit.org/archivesite/wp-content/uploads/ODA-loans-discussion-paper-v1.0-22.pdf> 접속일 2015.4.3.
- UNCTAD (2014)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ldc2014_en.pdf 접속일 2015.4.2.
- UN-OHRLLS (2014) Stat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14 EXCERPTS ON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at
http://unohrlls.org/custom-content/uploads/2014/12/Part_State_LDCs_Financing-for-Development_Rev_.pdf] 접속일 2015.4.1
- World Bank (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Was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11) Economics of Adaption to Climate Change at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1/06/06/economics-adaptation-climate-change> 접속일 2015.4.2.

첨부 1. OECD DAC HLM Communique (국영문)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 회의 코뮈니케 (2014년 12월 16일 오후 12시 30분)

1. 우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은 2014년 12월 15-16일 양일간 파리에서 고위급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지난 2012년에 열렸던 고위급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에 가입한 새로운 다섯 회원국들 -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 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아랍에미리트를 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ADB) 및 OECD 개발원조위원회 비회원국들 -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 도 심의에 참석하였다²³⁾.
2. 우리는 지난 15년간 개발의 엄청난 진보를 목격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이 절반으로 줄었고, 모든 개발 도상 지역에서 초·중·고등·대학교(at all levels) 등록률의 양성평등 달성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왔다. 또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아동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 세계 빈곤 종결의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되는 불안정과 갈등, 인도적 위기, 불평등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3. 우리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야심찬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Post-2015 의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다음 해에 개최될 세 개의 결정적인 회의들(decisive meetings) - 제3차 개발재원총회, Post-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1차 당사국총회 - 은 Post-2015 의제를 뒷받침하는 비전과 이행 수단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
4. 우리는 Post-2015 시대를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우리의 공헌이 필요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장하길 원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OECD가 가지고 있는 학제 간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들은 재정적·비재정적 수단과 노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재정적인 도전과 관련하여, 양허성 및 상업성 성격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재원들이 공공과

민간부문 및 모든 제공자로부터 동원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들은 각각의 상대적 이점을 살리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조세와 투자 분야를 포함한 OECD의 개발 금융 부문 관련 노력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원들을 모두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해 전 지구적인 접근성(global access to reliable statistics)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발 재원에 대한 최적의 계획, 할당, 사용 및 보고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국가, 지역 및 국제 투명성 및 책임성의 실현도 가능하게 한다.

5.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금융 통계는 정책 결정을 알리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글로벌 공공재이다. 2012년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지침에 따라, 우리는 개발금융 데이터의 통합 및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통계시스템, 측정 및 기준을 현대화하는 일에 착수했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와 관련해 달성된 진전사항을 살펴보고 많은 분야에서 결정을 내려왔다.
6. 특히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공적개발원조는 Post-2015 의제 이행 시 앞으로도 개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민간 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축은 국내 재원이 될 것이다.
7. 우리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3년 1,34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를 유지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UN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0.7% 달성 목표 지지를 포함하여 우리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약정액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
8. 우리는 또한 최빈국, 저소득국, 군소도서국, 내륙국, 취약국 및 분쟁국(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과 같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할당할 것을 합의한다. 우리는 오늘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감소 추세를 전환시킬 것을 합의한다. 국민총소득대비 0.15-0.20%의 공적개발원조를 최빈국에 지원하는 UN의 목표에 노력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그들의 약정액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는 공동의 행동과 각국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부록 1 참고). 우리는 OECD 동료평가 과정을 통해 각 회원국들의 약정액에 의거한 진전 상황과 더불어 우리의 고위관리회의(SLM)에서 개발원조위원회의 전반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9. 2012 고위급회의의 지침에 따라 우리는 공적개발원조의 핵심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오늘날 개발협력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의 개발 과제들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개

발원조 측정 방식 강화 방안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왔다. 우리는 양허성의 명확한 정의와 평화와 안보 지출(peace and security expenditures)에 대한 보고지침 개선,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정의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공적개발원조의 측정과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공적개발원조가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과 개발도상국에게 지원되는 공적 지원을 폭넓게 포착해 내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10. 대부분의 공적개발원조가 무상원조 형태로 제공되는 동안 양허성 차관도 측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 정의 중 불명확한 “양허성” 기준에 대한 회원국들의 해석의 차이가 점점 커져 왔다. 따라서 우리는 제공하는 증여에 대한 비교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수치 계산을 위한 증여등가액 측정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양허성 차관 보고 시스템을 현대화시킬 것에 합의한다. 새로운 보고 시스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credit)는 유상원조 보다는 무상원조에서 더 높게 인정될 것이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받는 차관에 있어서는, 양허성이 큰 차관(more concessional loans)이 양허성이 적은 차관들(less concessional loans)에 비해 더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credit) 수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증여등가액에 기초하는 보고와 함께 기존의 현금 흐름 시스템(cash-flow system)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수치도 계속해서 산출하고, 보고 및 발표될 것이다. 이는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유상원조의 실제 지출액과 상환액 날짜가 수집, 보고될 것을 의미한다.
11. 우리는 나아가 고정 할인율(국제통화기금(IMF)의 할인율, 현재 5%)과 위험조정할인율(상위 중소득국 1%, 하위중소득국 2%,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 4%)로 구성된 차별화시킨 할인율을 바탕으로 양허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증여등가방식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에게 높은 양허적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다.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게 높은 양허적 조건의 유상원조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증여율이 45%인 유상원조의 경우에만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되기 위해서 하위중소득국은 증여율이 최소 15%, 상위중소득국은 증여율이 최소 10%가 되어야 한다.²⁴⁾
12. 개발도상국들의 대출기간 연장 시 부채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약속에 맞추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한도 정책(Debt Limits Policy)이나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대출 정책(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된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로 보고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우리는 2015년 말까지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우리의 합의서(부록 2 참고)에 맞추어 통계작성만이 수정된 보고 지침사항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13. 우리는 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 참여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민간 부문 재원을 동원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사용을 바란다. 우리는 현재의 통계보고시스템이 어떤 회원국이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혁신을 장려하고 있는지와 같은 변화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금융 상품의 현대적인 분류체계 발전, 동원된 민간 부문 재원 측정 방식들(예: 보증을 통해 측정)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진전에 주목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시킨 공적개발원조의 노력을 반영하는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합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차기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기관별 접근법(Institutional approach)과 금융수단별 접근(Instrument-specific approach) 및 다른 가능한 접근법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우리는 공여국의 개발금융기관, 민간 부문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타 양자 기관, 유사 다자 기관과 같이 이 분야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14. 개발 의제들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를 넘어선 노력들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함께 새로운 통계 측정 방식을 개발할 것을 합의한다. 이 방식은 공적개발원조 측정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용된 자금의 유형이나 부가된 조건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개발도상국과 다자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였던 공적 재원 및 개입과 관련된 모든 재원의 흐름을 포함할 것이다(부록 3 참고). 본 측정방식과 관련된 요소들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 앞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개선될 것이다. 최종 기준(parameters)은 Post-2015 의제 합의 후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는 보증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금을 사용하는 민간 부문에서 공적 개입에 의해 동원된 자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 개입에 의해 동원되는 민간 재원의 양을 측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지지하며 새로운 측정방식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바란다.
15.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원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재원 흐름(resource flows)의 투명성은 개발협력 효과성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통계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정보 및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의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다년간의 국별 원조 프로그램(country programmable aid) 작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재원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대한 인식은 개발의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며, 우리는 평화구축과 국가건설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큰 정치적 추진력을 창출해 낼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D)의 폭넓은 인식 및 공적개발원조 보고 지시사항의 업데이트를 통해 우리의 통계 시스템이 이 분야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에 대해 더욱 연구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적개발원조의 주목적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안녕 증진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모임을 위해 이 작업을 제 시간 내에 완성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 우리는 Post-2015 의제를 뒷받침하는 모니터링 및 재정 프레임워크(monitoring and financing framework)를 위해 우리의 통계시스템과 도구(tools)를 향상시키고 현대화시켜 왔다. 이러한 이행을 통해, 우리는 공적 개발 자원과 관련하여 고품질(high-quality)의 통계 자료 보유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통계시스템, 측정 및 기준의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기타 이해관계자들(예: 수원국, 개발 자원의 기타 제공자들, 재단, 시민 사회, 민간 부문,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협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유럽연합, 이스라엘,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과 다른 개발 주체들(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다자 기구들)의 증가를 환영하며 다른 제공자들 또한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18. 우리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와 구성 요소(building blocks)를 통해 “성공적인 개발을 공유, 지원, 확산”하는 허브이자 선도적인 국제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에서 합의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의 유연하고 다자 이해관계자적(multi-stakeholder)이며, 활동에 초점을 둔 접근법이 Post-2015 의제 이행을 지원하는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개발협력포럼과 같은 다른 국제 포럼들과 함께 국제적인 차원(at international level)에서 Post-2015 의제 중 협력 질 제고 및 개발 효과성 원칙들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at country level)에서는 지속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및 경험 공유를 촉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의 원조 및 개발 효과성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더 많은 제공자들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향후 개발도상국에서 Post-2015 의제 이행과 관련한 노력들을 측정, 보고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9. 우리는 UN의 Post-2015 의제 선정 작업과 책임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의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지역적(regional), 현지적(local) 이니셔티브들과 2015년에 있을 결정적인 회의들(decisive meetings)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Post-2015 의제에 맞춘 개발 원조위원회 통계시스템 현대화 작업 완성을 위한 추가 분석 작업 수행을 위해 2015년 말 /2016년 초에 다시 모일 것이다.

부록 1: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원조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1. 우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은 최빈국(LDCs), 저소득국, 군소도서국, 내륙국, 취약국 및 분쟁국과 같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할당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과 각국의 행동을 통해 이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은 우리의 특별한 환경과 이전의 약속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또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들은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장려하고 재원에 있어 완화된 조건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진행 중인 양허성과 관련된 개혁의 주요 요소들이다. 또한 우리는 개발을 위한 외부 및 국내 재원의 동원을 특히 강조하며,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정책이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돕는다.
3. 우리는 2012년 UN의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인정한다.
 - ODA/GNI, LDCs 0.20% 이상: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 ODA/GNI, LDCs 0.15%~0.20%: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UK)
4. 전체적으로, 우리는:
 -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의 공적개발원조를 최빈국에 지원하는 UN의 목표를 기억하며, 최빈국으로의 원조 감소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ODA/GNI 0.7%의 UN 목표와 UN의 최빈국지원 목표에 노력한 국가를 포함하여 우리 각각의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
 - 정기적인 평가 - 개별적으로는 DAC 동료평가, 집단적으로는 고위관리회의(SLM) - 를 통해 회원국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시성(visibility) 강화에 동의한다.

- 공적개발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나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것은 빈곤 패턴이 변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을 포함하여, 원조종인 국가의 이슈, 취약함과 무방비함에 관련된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작업은 UN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른 개발행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할 것이다.
 - 여러 상황에서의 다양한 채널, 수단, 세부원칙의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질을 향상시킬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국가들 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국내 자원 동원을 위한 지역적 연계와 역량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포함한다.
5. 또한 다수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가장 필요한 국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발원조위원회는 향후에 그러한 정책의 개요를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록 2: DAC 통계에서 양허성차관의 보고 현대화

2012년 고위급회의(HLM)의 지시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는 DAC 통계에서 Post-2015 개발금융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선작업에 자원 할당, 동원, 책무성 목적을 고려한 양허성 차관의 처리방식을 개정하는데 착수했다. 개정된 체계는

- 회원들 간 통계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여 공여국 노력의 타당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 규모, 양허성 수준, 채무지속가능성과 같은 조건에서 개발도상국의 요구, 역량, 제약을 조정하는 대출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 DAC 통계의 신뢰성과 진실성, 개발협력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1. 양허성 차관은 공적개발원조의 중요한 부분이고, 다수의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원조의 다른 행위자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 사회적 공공기반시설에 장기적인 투자형태로 자금을 대고,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방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차관의 양허성 수준은 프로젝트의 유형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개발 및 특정한 역량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최근에 몇몇 회원국들은 그들의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양허적 차관은 다수의 저소득국가와 군소도서국을 포함하여, 국제자본시장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특정국에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적부채경

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국가 및 군소도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부당한 채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회원국들은 각각의 프로젝트와 그 대응하는 프로젝트들에 있어 위와 같은 국가들에게 높은 양허성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과 또한 부채 지속가능성을 막는 보호 장치에 대한 지지를 표해왔다. 적용될 부채의 규모 및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를 지지한다.

3.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유상원조는 10%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율이 최소 25% 이상인 “성격적 양허성”을 가질 경우에만 양허적 성격의 ODA로 보고될 수 있다. 2012년 고위급회의(HML)는 적어도 2015년에는 발행 당시의 시장조건(prevaling market conditions)에 맞는 “성격적 양허성”을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정의할 것에 동의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유상원조의 보고는 대중의 비판적인 평가에 맞설 수 있어야하고 상업 논리(commercial logic)에 따른 정의가 아닌 다자 개발 금융에서 정의되는 양허성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4. 현재 DAC 통계에서 양허적 차관은 현금흐름(cash-flow)에 기초하여, 지출할 때는 ODA 증가로, 상환할 때는 ODA 감소로 산출된다. 시간이 지나, 만약 수원국이 차관을 상환했다면 차관의 순 ODA 효과는 결국 0이지만, 상환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상환액의 실질가치는 차관의 액면가보다 상당히 낮아진다. 현재 체계에서는 특정연도(any given year)에 산정되는 ODA는 과거의 개발협력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이러한 현재 DAC 통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공적개발원조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증여등가액 측정방식을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 새로운 보고 체계 아래에서 계산 및 보고되는 공적개발원조는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에서 더 많이 계산될 것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로 기록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 차관은 양허성이 큰 차관이 양허성이 적은 차관보다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이다.
6.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노력은 유상원조의 자금조달비용과 이와 관련된 리스크로 이루어진다. 부유한 국가로 대출하는 것 보다 빈곤한 국가로 대출할 때 공여국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우리는 차별화된 할인율에 기반을 두고 양허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율은 국제통화기금(IMF) 할인율(현재 5%)인 고정할인율과 상위중소득국은 1%, 하위중소득국은 2%,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은 4%를 더한 조정할인율로 구성될 것이다.
7. 양허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되는 증여등가액 측정방식과 함께 최빈국과 기타 저소득국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게 높은 양허적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가난한 국가에 조금 더 사용가능한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정책 목표이다.

8. 최빈국과 기타 저소득국에 높은 양허적 조건의 유상원조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45% 증여율을 갖는 차관만이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될 것이다. 양허성에 대한 필요(the need for concessional)는 국가가 부유해짐으로써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되기 위한 유상원조가 하위중소득국에는 최소 15%, 상위중소득국에는 최소 10%의 증여율을 가질 것을 합의했다.²⁵⁾²⁶⁾
9. 개발도상국들의 대출기간 연장 시 부채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약속에 맞추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한도 정책(Debt Limits Policy)이나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대출 정책(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된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로 보고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10. 이 변화는 2018년부터 보고 기준으로 될 것이다(이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보고는 2019년 초에 발표). 2014년 공적개발원조는 2013년 개발원조위원회의 양허성 협정에 기반을 두고 보고될 것이다. 2015년(2016년 초에 발표하는 보고서)부터 2017년까지는 새로운 체계와 현재(2013년) 체계가 함께 사용되어 보고될 것이다.
11. 오늘 우리의 합의에 따라 적용될 할인율 및 증여율 기준은 대출비용의 변화, 새로운 리스크(예, 연체율 반영),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요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출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된 다른 접근법의 평가를 OECD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 하여, 우리는 오늘 동의한 조정할인율들을 재평가할 수도 있다. 일단 새로운 체계가 발효되면, 개발원조위원회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12. 우리는 부산 투명성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13. 현재 체계에서 공적개발원조로 보고되는 유상원조는 새로운 체계가 적용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증여등가액에 기초하는 보고와 함께 기존의 현금 흐름 시스템(cash-flow system)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수치도 계속해서 산출, 보고 및 발표될 것이다. 이는 차관의 실제 지출과 상황 데이터가 계속해서 집계되고 발표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체와 순 ODA 흐름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황을 포함하여) 지출과 상황이 매우 높은 정도의 투명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14. 우리는 위험비용이 이중으로 계산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순 거래액에서 위험조정증여등가액으로 변화된 측정 체계는 우리의 유상원조 부채 경감 기준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대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 다자간 부채경감 이니셔티브(MDRI)와 같은 채무구제 이니셔티브들이 나타나게 된 과거를 유념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채무 구제 보고의 규칙이 중복 집계를 피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15. 현재의 부채경감보고규칙은 2017년 자금 흐름 보고까지 적용될 것이며, 이후 에는 오늘 우리의 합의를 반영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16. 보고의 시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5년 말까지 개발원조 위원회가 지지하는 변경된 보고 지침사항(Reporting Directives)을 준비할 것을 통계작업반에게 요청한다.

부록 3: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

1. 우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과 기타 OECD 회원국들은 개발 의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원과 전문지식을 끌어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양허적 자금을 넘어 다양한 지원을 OECD DAC 통계에서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정책은 개발금융옵션 및 영향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과 이해를 높이고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시키며, 우리 위원회만이 아닌 개발협력제공자들과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Post-2015 의제를 이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재원 동원을 모니터링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3. 우리는 이 측정수단과 관련해 수행된 작업을 검토해왔고, 이에 대한 설명과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정립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참여해 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4. 오늘 우리는 지속가능한 총 공적 개발(TOSD) 정책을 만드는 것에 합의한다. 이것은;
 - ODA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할 것이다.
 - 이는 사용된 자금의 유형이나 부가된 조건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개발도상국과 다자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였던 공적 재원 및 개입과 관련된 모든 재원의 흐름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무상원조(grants), 차관(loans), 지분투자(equity),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된 양허적 · 비양허적 금융을 포함함)

- 개발과 관련이 있고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다룰 것이다.
- 공적지원과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된 자금 간 구분 뿐 아니라, 공급액과 불확정 채무 간 차이를 분명하게 할 것이다.
- 지원과 공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 거래액(net flow)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동시에 총 현금 흐름 기초(gross cash-flow basis) 상의 재원도 집계하고 보고할 것이다.

5. 우리는 정책의 정의와 통계적 특징, 더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에 기여하길 희망하며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기타 개발협력행위자, 그리고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의 정의와 통계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협의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이 새로운 정책이 공적 조정에 의해 동원된 민간 금융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을 분석할 것이다.

6. 우리는 Post-2015 의제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종 기준(parameters)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Post-2015 모니터링 체계에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여로서, 우리는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 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정책의 새로운 특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 번역은 김찬유, 이인호 통계전문관이 작성하였습니다.

23) OECD 가입 추진국인 콜롬비아와 라트비아의 대표 및 브라질, 중국,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들도 옵저버(observer)로서 DAC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아랍조정그룹기구(Arab Co-ordinating Group Institutions) 대표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동의장(말리위),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 공동간사(가이아나, 노르웨이),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참석하였다.

24) 한 회원국은 현 단계에서 하위중소득국과 상위중소득국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25) 한 회원국은 현 단계에서 하위중소득국과 상위중소득국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26) 유사원조들 중 일부는 다양한 이자율을 가짐. 이러한 유사원조의 경우에, 양허성 판단은 약정한 시점에만 적용됨.

15-16 December 2014,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DAC HIGH LEVEL MEETING FINAL COMMUNIQUÉ



16 December 2014

1. We, the members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convened at high level in Paris on 15-16 December 2014. We welcomed the five new members who have joined the Committee since our last High-Level Meeting in 2012: the Czech Republic, Iceland, Poland, the Slovak Republic and Slovenia. We also welcomed the United Arab Emirates as the first country beyond the OECD membership to become a Participant of our Committe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Bank,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non-DAC OECD members – Chile, Estonia, Hungary, Israel, Mexico and Turkey – participated in our deliberations.¹

2. We have witnessed tremendous development progress over the past 15 years. Globally, extreme poverty has been halve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reaching gender parity in school enrolment at all levels and in all developing regions and child mortality has been halved as has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access to safe water. Yet the job of ending global poverty is unfinished, and we encounter continued instability and conflict, humanitarian crises and rising inequality. Addressing all these challenges in a sustainable way requires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3. We met as the world prepares the ground for the post-2015 agenda, an ambitious global framework for achieving inclusiv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Three decisive events taking place next year will sharpen the vision and clarify the means of implementation underpinning this agenda: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4. As we shape the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the post-2015 era, we want to ensure our contributions make the difference that is needed. We invite the OECD to fully use its interdisciplinary expertise to support members and partners as they design and implement the range of policies needed to achieve these goals in all countries. This new set of goals will requir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means and efforts. As regards the financing challenge, a wide arra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ources – both concessional and commercial in nature – needs to be mobilised from public and private sources and from all providers. These different resources must also be used effectively, drawing on their respectiv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is context, we welcome relevant efforts from across the OECD on development finance, including in the areas of taxation and investment. We consider that improving global access to reliable statistics regarding all these resources will be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developing and provider countries, to optimally plan, allocate, use and account for development resources. Reliable statistics will also facilitat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¹ Representatives from OECD accession countries, Colombia and Latvia, as well as from Brazil, China, Croatia, India, Indonesia, and South Africa also attended the DAC High Level Meeting as observers. Also present were representatives of the Arab Co-ordinating Group Institutions, the co-chair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Malawi), the co-facilitators of the July 2015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Guyana and Norway), the OECD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the OECD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and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5. OECD DAC statistics on development finance are a global public good that informs policy choices, promotes transparency and fosters accountability. Following a mandate that we adopted at the 2012 High Level Meeting, we began work to modernise our statistical system, measures and standards to ensure the integrity and comparability of data on development finance and create the right incen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resource mobilisation. We have today taken stock of progress achieved in this regard, and have taken decisions in a number of areas.

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ill remain a crucial par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implementing the post-2015 agenda, particularly for countries most in need. We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t role of international private flows. Domestic resources, however, will continue to be the main pillar of development finance for the broad majority of developing countries.

7. We note that despite challenging fiscal circumstances in many OECD countries, we have maintained high levels of ODA – which reached an all-time high of USD 134.8 billion in 2013. We reaffirm our respective ODA commitments, including those of us who have endorsed the UN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as ODA to developing countries, and agree to continue to make all efforts to achieve them.

8. We also agree to allocate more of total ODA to countries most in need, such as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low-income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We have agreed today to commit to reversing the declining trend of ODA to LDCs. Those members who have committed to the specific UN target of 0.15-0.20 per cent of GNI as ODA towards these countries reconfirm their commitment.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action and individual steps to better target ODA towards countries most in need (See Annex 1). We will monitor progress in line with each member's commitments through the OECD peer review process, and additionally on an aggregate DAC level at our senior level meetings.

9. In line with the 2012 High Level Meeting mandate, we have carefully examined how the ODA measure could be strengthened to reflect the nature of today'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better address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 challenges, while maintaining its core character. We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ODA definition and further strengthening transparency regarding its measurement and use, including through defining clearly concessionality and updating the reporting guidance on peace and security expenditures. We also recognise that ODA can help bring in private investment to support development, and that it is essential to capture the breadth of official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10. While most ODA is provided in the form of grants, concessional loans form an important part of the measure. However, differences have developed in the way members interpret the unclear "concessional in character" criterion of the ODA definition. We therefore agree to modernise the reporting of concessional loans to make it easier to compare the effort involved with that in providing grants, by introducing a grant equival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ODA figures. This means that under the new reporting system, ODA credit counted and reported will be higher for a grant than for a loan. Furthermore, among loans which pass the tests for ODA scoring, more concessional loans will earn greater ODA credit than less concessional loans. Alongside reporting on a grant equivalent basis, ODA figures will continue to be calculated, reported and published on the previous cash-flow system. This means that data on actual disbursements and repayments of loans will continue to be collected and published in a fully transparent manner.

11. We have further decided to assess concessionality based on differentiated discount rates, consisting of a base factor, which will be the IMF discount rate (currently 5%), and an adjustment factor of 1% for UMICs, 2% for LMICs and 4% for LDCs and other LICs. This system, combined with a grant equivalent method, is expected to incentivise lending on highly concessional terms to LDCs and other LICs. To ensure that loans to LDCs and other LICs are provided at highly concessional terms, only loans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45% will be reportable as ODA. Loans to LMICs need to have a grant element of at least 15%, and those to UMICs of at least 10%, in order to be reportable as ODA.²

12.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debt sustainability when extending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we agree that loans whose term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MF Debt Limits Policy and/or the World Bank's 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 will not be reportable as ODA. We request the WP-STAT to prepare the revised Reporting Directives, in accordance with our agreement further detailed in Annex 2, for endorsement by the DAC by the end of 2015.

13.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and we want to encourage the use of ODA to mobilise additional private sector resources for development. We recognise that the present statistical reporting system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nging way in which members are engaging with the private sector, nor does it incentivise innovation. We take note of progress already made in developing a modern taxonomy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methodologies to measure private sector resources mobilised, for example through guarantees. We agree to urgently undertake further work to reflect in ODA the effort of the official sector in catalys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effective development. In doing so, we will explore further the institutional and instrument-specific approaches that have been developed by members, and potentially other approaches, with the aim of concluding at our next meeting.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agencies with special expertise in this field, such as donor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other bilateral institutions that use private-sector instruments, and similar multilateral institutions.

14. The development agenda is becoming broade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recognise and further incentivise the efforts that are being made above and beyond ODA. Accordingly, we agree to continue to develop the new statistical measure, with the working titl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D). This measure will complement, not replace, the ODA measure. It will potentially cover the totality of resource flows extended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suppo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riginating from official sources and interventions,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struments used and associated terms. (See Annex 3). The components of this measure have been discussed and will be refined, working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lead-up to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Addis Ababa. Its ultimate parameters will be clarified once the post-2015 agenda has been agreed. We will also collect data on resources mobilised by official interven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using leveraging instruments such as guarantees. We support continued wor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measuring the volume of private finance mobilised by official interventions and want to explore whether and how this could be reflected in a new measure.

15.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 optimally use the increased diversity of funding sources that they can access today will be important. The transparency of resource flows reaching developing countries plays a role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e will therefore strengthen our dialogue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that our statistical system contributes to meeting their information and planning needs. Further, we will continue to develop our systems for measuring resource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building on our longstanding work with country programmable aid.

16. Recognising that building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will be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the development agenda, we will generate greater political momentum in support of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efforts. We agree to further explore how support in this area could be better reflected in our statistical system through a possible broader recognition in TOSD, and through updating ODA reporting instructions. In doing so, we will ensure that the main objective of ODA remains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We aim to complete this work in time for our next meeting.

² One member is not able to agree at this stage to apply the thresholds for LMICs and UMICs.

17. We have come some distance in our efforts to upgrade and modernise our statistical systems and tools in order for them to contribute to monitoring the financing framework underpinning the post-2015 agenda. By implementing these chang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remain the centre of excellence of high-quality statistics on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We will explore ways of engaging more systematically with other stakeholders (e.g. partner countries, other providers of development finance, foundations, civil society, private sector,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the further development and use of our statistical system, measures and standards. We welcome the reporting of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from an increasing number of sovereign states beyond DAC members (such as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Israel, Kuwait, Liechtenstein, the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Thailand, Turkey,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s well as other development actors (including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nd more than 30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encourage other providers to follow their example.

18. We strongly support the 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agreed in Busan, as a leading international policy platform and a hub to “share, support and spread development success”, including through the contribution of voluntary initiatives and building blocks. We believe the GPEDC’s flexible, multi-stakeholder, action-focussed approach means that it can play a useful role in helping to implement the post-2015 agenda. We stand ready – with other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 to drive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anchor the quality of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in the post-2015 agenda, and at country level to foster learning and exchange of experience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We reaffirm our existing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commitments and resolve to further engage with other providers. We note that a strengthened GPEDC monitoring framework can be a useful tool to measure and report on progress in support of future efforts to implement the post-2015 agenda at developing country level.

19. We look forward to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UN-led process to shape the ambitious post-2015 agenda, and the renewed global partnership to support its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future accountability and monitoring system. We will engage with inter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itiatives and actions for a successful outcome of the decisive meetings in 2015.

20. We will reconvene end-2015/early-2016 to take stock of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s we have taken today, and in carrying out additional analytical work to bring to closure our effort to modernise the DAC statistical system for the post-2015 era.

Annex 1: Measures to improve the targeting of aid to countries most in need

1. We, DAC members, agree to allocate more of total ODA to developing countries most in need, such as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low-income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We will strive to achieve this goal together, through both collective efforts and individual actions. Our collective and individual efforts will take into account our specific circumstances and previous commitments.

2. We als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mplementary measures to help countries most in need. These include measures such as incentivising more ODA and ensuring softer terms and conditions for finance. These are key elements of our ongoing reform on concessionality. We are also putting particular emphasis on mobilising additional resources, both external and domestic, for development and using ODA in a catalytic way so that it helps leverage domestic policies for greatest impact.

3. We acknowledge the effort of the following DAC member countries who have committed to and met the UN target for ODA to LDCs in 2012: Denmark, Ireland, Luxembourg, Norway and Sweden (above 0.20% of GNI as ODA to LDCs), and Finland,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between 0.15% and 0.20% of GNI as ODA to LDCs).

4. Collectively, we agree to:

- reverse the declining trend of aid to LDCs, recalling the specific UN target of 0.15% – 0.20% of GNI as ODA allocated to LDCs. We reaffirm our respective ODA targets, including those who have committed to the UN target of 0.7% ODA/GNI target and the UN LDC target, and reaf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achieve them.
- enhance the monitoring and visibility of members' performance in providing support to countries most in need through regular assessments, both individually through DAC peer reviews and collectively on the occasion of senior level meetings.
- undertake more analytical work to help identify countries where ODA is most needed and where additional actions may be required. This could include issues such as under-aided countries, aspects related to fragility and vulnerability, including in LDC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s well as questions of changing poverty patterns. This work will be done in collabo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actors including the UN system.
-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ODA through the monitoring of the impact of different channels, instruments and modalities in various contexts and for different purposes across countries, including in countries most in need. This includes measures to promote regional connectivity and capacity for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5. A number of DAC members also commit to additional measures to better target their support to countries most in need as a step towards achieving their commitments. The DAC will establish a compendium of such measures from this day forward, and will make it publicly available.

Annex 2: Modernising the reporting on concessional loans in DAC statistics

In line with the 2012 HLM mandate, the DAC has worked on options to revise the treatment of loan concessionality in DAC statistics,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 allocation, mobilisation and accountability objectives of the general reform of the system for measuring development finance post-2015. The revised system should:

- **provide a fairer picture of donor effort, ensuring comparability of resulting statistics across members;**
- **encourage lending practices that are aligned with developing countries' needs, capacities and constraints in terms of volumes, concessionality levels and debt sustainability;**
- **strengthen the credibility and integrity of DAC statistics and the transparen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Concessional loans have been an important part of ODA, actively used by a number of members, as well as by other providers of development assistance. Such loans are important instruments to finance long-term investments in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address the vast financing needs for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The level of concessionality of loans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development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ir specific capacities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project.

2. In recent years, some members have been scaling up their lending programmes. Concessional loans help mobilise more resources in particular for countries with limited or no access to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including many low-income countries (LIC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Members are, though, also very concerned to avoid adding inappropriately to the debt burdens of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ose, mostly LICs and SIDS, who have needed official debt relief in recent years. They have expressed their support for measures to ensure that lending to such countries is highly concessional, and adapted to the nature of each project and counterpart, and for safeguards to ensure debt sustainability. All members support the IMF/World Bank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as a determining factor for the volume and terms of debt that should be taken on.

3. To be recognised as concessional and reportable as ODA, a loan must according to the present reporting criteria have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calculated at a discount rate of 10%, and be "concessional in character". The 2012 HLM agreed to establish, as soon as possible, and at the latest by 2015, a clear, quantitative definition of "concessional in character", in line with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It also agreed, among other things, that "the reporting of loans should withstand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public, b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way concessionality is defined in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and prevent notions that ODA loans schemes follow a commercial logic".

4. Concessional loans are at present counted in DAC statistics on a cash-flow basis, as positive ODA when disbursed, and as negative ODA when repaid. Over time, the net ODA effect of the loan – if repaid – is therefore zero, but in times of inflation, the real value of the repayments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face value of the loan. In the present system, ODA in any given year may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of the past.

5. To address weaknesses of current DAC statistics, we agree to introduce a grant equival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ODA figures. This means that under the new reporting system, greater credit, in terms of the amount of ODA scored and reported, will accrue to grants rather than loans. Among loans which pass the tests for ODA scoring, more concessional loans will earn greater ODA credit than less concessional loans.

6. The donor effort in providing a loan consists both of the funding cost of the loan and the risk associated with it. Recognising that lending to poorer countries involves greater donor effort than lending to richer countries, we have decided to assess concessionality based on differentiated discount rates. The rates will consist of a base factor, which will be the IMF discount rate (currently 5%), and an adjustment factor of 1% for UMICs, 2% for LMICs and 4% for LDCs and other LICs.

7. Having a higher discount rate for LDCs and other LICs, combined with a grant equivalent method whereby higher concessionality results in more ODA being reportable, is also expected to incentivise lending on highly concessional terms to LDCs and other LICs, and thereby to help concentrate the available ODA resources more on the poorest countries. This is a policy goal members support.

8. To ensure that loans to LDCs and other LICs are provided at highly concessional terms, only loans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45% will be reportable as ODA. The need for concessionality reduces as countries become richer. So we have agreed that loans to LMICs need to have a grant element of at least 15%, and those to UMICs of at least 10%, in order to be reportable as ODA.^{3,4}

9.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debt sustainability when extending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we agree that loans whose term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MF Debt Limits Policy and/or the World Bank's 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 will not be reportable as ODA.

10. The changes will become the standard of reporting from 2018 (for which ODA reporting will take place in early 2019). ODA will be reported for 2014 on the basis of the 2013 DAC agreement on concessionality. It will be reported from the year 2015 (i.e. in reports issued from early 2016) to the year 2017 using both the new and the current (2013) system.

11. The discount rates and the grant element thresholds to be applied under the changes we are agreeing today will need to be regularly reviewed, reflecting changes in borrowing costs, emerging experience with risk (for example as reflected in default rates) and any need for further incentives for countries most in need. We agree to further study the basis for assessing the risks incurred in lending, and ask the OECD to help assess different approaches proposed by member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may reassess the adjustment factors agreed today. Once the new system takes effect, the DAC will regularly assess the need for such adjustments, in particular following any change to the IMF rate.

12. We agree to live up to our Busan transparency commitments.

13. A considerable stock of loans that have been reported as ODA in the existing system will remain outstanding by the time of the change. So alongside reporting on a grant equivalent basis, ODA figures will continue to be calculated, reported and published on the previous cash-flow system. This means that data on actual disbursements and repayments of loans will continue to be collected and published. There will therefore be a very high degree of transparency on disbursements and reflows (payments on principal and interest), and therefore on gross and net ODA flows.

14. We agree that the cost of risk should not be double counted. Changing the measurement system from net flows to risk-adjusted grant equivalents will therefore also change the basis on which we report on debt relief of ODA loans. We have therefore agreed that the rules on reporting ODA debt relief will need to be updated to rule out double counting, bearing in mind the past need to encourage debt relief initiatives such as HIPC and MDRI.

15. More generally, we have also concluded that the existing regulations for reporting debt relief should expire with the reporting of 2017 flows, and be replaced by new regulations reflecting our agreement today.

16. The WP-STAT is requested to prepare the revised Reporting Directives for endorsement by the DAC by the end of 2015, including looking at options to improve the timeliness of reporting.

³ One member is not able to agree at this stage to apply the thresholds for LMICs and UMICs.

⁴ A small proportion of loans are extended with variable interest rates. For these loans, the concessionality test is only applied at the time of the commitment.

Annex 3: Developing a new measure -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We, DAC members, recognise that the development agenda is broad and complex and that we need to mobilise resources and expertise to address related challenges.
2. We agree, therefore, that there is a need to capture in OECD DAC statistics the wide array of support we are providing beyond concessional finance through a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title). Such a measure would encourage visibility and understanding about development financing options and impacts, enhance transparency and foster accountability beyond ODA, and facilitate information-sharing with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yond our Committee. This will contribute to broader global efforts to monitor international resource mobilisation for implementing the post-2015 agenda.
3. We have reviewed the work carried out on this measure and express our appreci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our ongoing efforts to shape its narrative and possible components.
4. We agree, today, to create a TOSD measure, which will:
 - complement and not replace ODA;
 - potentially cover the totality of resource flows extended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suppo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riginating from official sources and interventions,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struments used and associated terms, i.e. including both concessional and non-concessional financing provided through various instruments, such as grants, loans, equity and mezzanine finance;
 - cover activities that promote and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contributions to global public goods when these are deemed relevant for development and aligned with developing countries' priorities;
 -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official support and flows mobilised through official interventions, but also between flows and contingent liabilities; and
 - capture and report resources on a gross cash-flow basis, while also collecting and publishing net flows so as to ensure full transparency of support and flows.
5. We agree to consult broadly with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other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akeholders on the scope, definition and statistical features of the measure, with the hope of contributing to a more global monitoring mechanism. We will also explore whether and how private finance mobilised by official interventions could be reflected in this new measure.
6. We will clarify the ultimate parameters once the final shape of the post-2015 agenda has been agreed. We will share the emerging features of this measur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July 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in Addis Ababa, as an additional DAC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monitoring framework, and use the opportunity to collect feedback on these features.

첨부 2. DAC 수원국 리스트 (2014-2016년 보고용)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1 045 in 2013)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1 046-\$4 125 in 2013)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4 126-\$12 745 in 2013)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¹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anzania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Vanuatu ¹ Yemen Zambi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enya Tajikistan Zimbabwe	Armenia Bolivia Cabo Verde Cameroon Congo Côte d'Ivoire Egypt El Salvador Georgia Ghan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Kosovo Kyrgyzstan Micronesia Moldova Mongolia Morocco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ri Lanka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okelau Ukraine Uzbekistan Viet Nam West Bank and Gaza Strip	Albania Algeria Antigua and Barbuda ²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elize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Chile ² China (People's Republic of) Colombia Cook Islands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Fiji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abon Grenad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Lebanon Liby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ontenegro Montserrat Namibia Nauru Niue Palau Panama Peru Saint Helena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Suriname Thailand Tonga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ruguay ² Venezuela Wallis and Futuna

(1)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L.20 adopted on 4 December 2013 decided that Equatorial Guinea will graduate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y category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and that Vanuatu will graduate four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2) Antigua and Barbuda, Chile and Uruguay exceeded the high income country threshold in 2012 and 2013. In accordance with the DAC rules for revision of this List, all three will graduate from the List in 2017 if they remain high income countries until 2016.

출처: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AC%20List%20of%20ODA%20Recipients%202014%20final.pdf>

첨부 3. DAC List of ODA-eligibl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channels of delivery codes) for 2013

Channel Parent Category	Channel Code for Reporting	Year	Acronym (ENG)	Full Name (English)	Coefficient for core contributions	DAC 2a/3a Row	MCD
10000	10000			PUBLIC SECTOR INSTITUTIONS			
11000	11000			Donor Government			
12000	12000			Recipient Government			
13000	13000			Third Country Government (Delegated co-operation)			
20000	20000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AND CIVIL SOCIETY			
21000	21000			INTERNATIONAL NGO			
21000	21045	2013	AMREF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100		MCD
21000	21046	2013	ACORD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100		Not MCD
21000	21001	2013	AGID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Not MCD
21000	21005	2013	CUTS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International	100		Not MCD
21000	21029	2013	MSF	Doctors Without Borders	100		MCD
21000	47035	2013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 in the Third World	100		MCD
21000	21007	2013	ELCI	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100		Not MCD
21000	21011	2013	GCE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100		Not MCD
21000	21013	2013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100		Not MCD
21000	21024	2013	IPS	Inter Press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100		Not MCD
21000	21038	2013		International Alert	100		Not MCD
21000	21057	2013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100		Not MCD
21000	21016	2013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00		MCD
21000	21044	2013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100		Not MCD
21000	21018	2013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MCD
21000	21020	2013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100		MCD
21000	21022	2013	INAFI	International Network for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100		Not MCD
21000	21042	2013	Interpeac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lliance	100		Not MCD
21000	21023	2013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100		MCD
21000	21061	2013	IRTC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100		Not MCD
21000	21034	2013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100		MCD
21000	21053	2013		IPAS-Protecting Women's Health, Advancing Reproductive Rights	100		Not MCD
21000	21054	2013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100		Not MCD
21000	21031	2013	PANOS	PANOS Institute	100		Not MCD

21000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100			MCD
21000	21041	2013	PSI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Not MCD
21000	21036	2013	WUS			World University Service		100			Not MCD
22000	22000					Donor country-based NGO					
22000	21047	2013				AgriCord		100			Not MCD
22000	21060	2013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00			Not MCD
22000	21006	2013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100			Not MCD
22000	21049	2013		ECDFM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100			Not MCD
22000	21008	2013		Eurostep		Eurostep		100			Not MCD
22000	47042	2013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100			Not MCD
22000	21050	2013				Geneva Call		100			Not MCD
22000	21014	2013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100			Not MCD
22000	21015	2013		ICRA		International Catholic Rural Association		100			Not MCD
22000	21058	2013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100			Not MCD
22000	21019	2013		I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ettlements and Neighbourhood Centres		100			Not MCD
22000	21025	2013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100			Not MCD
22000	21026	2013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100			Not MCD
22000	21027	2013		ITF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		100			Not MCD
22000	21040	2013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100			Not MCD
22000	21033	2013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00			Not MCD
22000	21037	2013		WWB		Women's World Banking		100			Not MCD
22000	21035	2013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100			Not MCD
23000	23000					Developing country-based NGO					
23000	21059	2013		ASF		Africa Solidarity Fund		100			Not MCD
23000	21048	2013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100			Not MCD
23000	21010	2013		FAW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100			Not MCD
23000	21051	2013		ISPEC		Institut Supérieur Panafricain d'Economie Coopérative		100			Not MCD
23000	21028	2013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 - 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100			Not MCD
23000	21003	2013		CLASCO		Latin American Council for Social Sciences		100			Not MCD
23000	21030	2013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100			Not MCD
23000	21055	2013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100			Not MCD
30000	30000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nd NETWORKS					
31000	31000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31000	30008	2013				Cities Alliance		100			MCD
31000	30016	2013		EFS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100			MCD
31000	30007	2013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100			MCD

31000	30001	2013	GAIN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100		MCD
31000	30012	2013	GOPF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100		MCD
31000	47043	2013		Global Crop Diversity Trust		100		MCD
31000	30015	2013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00		MCD
31000	30003	2013	GeSCI	Global Schools and Communities Initiative		100		MCD
31000	30004	2013	GWP	Global Water Partnership		100		MCD
31000	30005	2013	IAVI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100		MCD
31000	30006	2013	IPM	International Partnership on Microbicides		100		MCD
31000	30011	2013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00		MCD
31000	30013	2013	MEF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100		MCD
31000	30014	2013	REGMIFA	Region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Fund for Sub-Saharan Africa		100		MCD
31000	21056	2013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100		MCD
31000	30017	2013	SANAD	SANAD Fund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00		MCD
31000	30009	2013	SAS	Small Arms Survey		100		MCD
32000	32000			Network				
32000	47010	2013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00		MCD
32000	47028	2013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MCD
32000	21043	2013	AWPEPA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		100		MCD
32000	31004	2013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ernational Secretariat		100		MCD
32000	31001	2013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100		MCD
32000	31002	2013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100		MCD
32000	21017	2013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0		MCD
32000	31003	2013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100		MCD
32000	31005	2013	PNWB	Parliamentary Network on the World Bank		100		Not MCD
40000	40000			MULTILATERAL ORGANISATIONS				
41000	41000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41000	41147	2013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MCD
41000	41101	2013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MCD
41000	41102	2013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MCD
41000	41106	2013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MCD
41000	41105	2013	ESCS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MCD
41000	41103	2013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MCD
41000	41104	2013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MCD
41000	41301	2013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932	MCD
41000	41312	2013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941	MCD
41000	41107	2013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100		MCD

41000	41108	2013	IFAD	Cooperation Fund Only)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00	988	MCD
41000	41302	2013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940	MCD
41000	41144	2013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MCD
41000	41145	2013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MCD
41000	41303	2013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937	MCD
41000	41110	2013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MCD
41000	41305	2013	UN	United Nations		18	938	MCD
41000	41111	2013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MCD
41000	41122	2013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963	MCD
41000	41112	2013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MCD
41000	41142	2013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MCD
41000	41310	2013	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UN/FIL, MINURSO, UNOMIG terminated June 2009), UNMIK, MONUSCO (named MONUC prior to July 2010), UNMIL, UNOCI, MINUSTAH, UNMIS (terminated July 2011), UNMIT, UNAMID, MINURCAT (terminated December 2011)		7	943	MCD
41000	41148	2013	UNDP-SP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MCD
41000	41114	2013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959	MCD
41000	41314	2013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948	MCD
41000	41304	2013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942	MCD
41000	41146	2013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MCD
41000	41116	2013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MCD
41000	41316	2013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61	924	MCD
41000	41313	2013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64	946	MCD
41000	41120	2013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100		MCD
41000	41123	2013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MCD
41000	41125	2013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MCD
41000	41315	2013	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75	977	MCD
41000	41126	2013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MCD
41000	41127	2013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MCD
41000	41121	2013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967	MCD
41000	41128	2013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00		MCD
41000	41311	2013	PBF Window 1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One: Flexible)		89	923	MCD

41000					Contributions Only)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Two: Contributions Only)	Restricted	100			MCD
41000	41119	2013	PBF Window 2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974		MCD
41000	41130	2013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964		MCD
41000	41129	2013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MCD
41000	41133	2013		UNIS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100			MCD
41000	41131	2013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100			MCD
41000	41132	2013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100			MCD
41000	41134	2013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including Endowment Fund)		100			MCD
41000	41137	2013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00			MCD
41000	41138	2013		UNVF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100			MCD
41000	41136	2013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100			MCD
41000	41135	2013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100			MCD
41000	41306	2013		UPU		Universal Postal Union		16	936		MCD
41000	41140	2013		WFP		World Food Programme		100	966		MCD
41000	41307	2013		WHO-Assessed		World Health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76	931		MCD
41000	41143	2013		WHO-CVCA		World Health Organisation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100	930		MCD
41000	41308	2013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814		MCD
41000	41309	201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4	933		MCD
42000	42000					European Union Institution (EU)					
42000	42001	2013		EC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Share of Budget		100	917		MCD
42000	42003	2013		EDF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Development Fund		100	918		MCD
42000	42004	2013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919		MCD
43000	4300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43000	43005	2013		IMF-PC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st-Catastrophe Debt Relief Trust		100			MCD
43000	43002	2013		IMF-PRG-HIP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Fund (includes HIPC,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and ECF-HIPC sub-accounts)		100	949		MCD
43000	43004	2013		IMF-PRG-MDR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100			MCD
43000	43001	2013		IMF-PRG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100	958		MCD
43000	43003	2013		IMF-EPCA-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bsidization of Emergency Post Conflict Assistance/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for PRGT-eligible members		100			MCD
44000	44000					World Bank Group (WB)					

44000	44006	2013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MCD
44000	44001	2013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901	MCD
44000	44002	2013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905	MCD
44000	44003	2013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MCD
44000	44007	2013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904	MCD
44000	44004	2013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903	MCD
44000	44005	2013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902	MCD
45000	45000			World Trade Organisation			
45000	45002	2013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MCD
45000	45003	2013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MCD
45000	45001	2013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MCD
46000	46000			Regional Development Bank			
46000	46002	2013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913	MCD
46000	46003	2013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914	MCD
46000	46022	2013	Afeximbank	African Export Import Bank	100		MCD
46000	46008	2013	CAF	Ar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MCD
46000	46004	2013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915	MCD
46000	46005	2013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916	MCD
46000	46006	2013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MCD
46000	46009	2013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906	MCD
46000	46020	2013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MCD
46000	46007	2013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910	MCD
46000	46024	2013	CEB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18		MCD
46000	46023	2013	PTA Bank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MCD
46000	46015	2013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MCD
46000	46018	201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MCD
46000	46017	2013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MCD
46000	46016	2013	EBRD TFs -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MCD
46000	46019	2013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MCD
46000	46013	2013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912	MCD
46000	46012	2013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909	MCD

46000	46025	2013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100		MCD
48000	46021	2013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MCD
47000	47000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47000	47111	2013		Adaptation Fund		100		Not MCD
47000	47009	2013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Not MCD
47000	47001	2013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Not MCD
47000	47137	2013	ARC	African Risk Capacity Group		100		Not MCD
47000	47005	2013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MCD
47000	21002	2013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100		Not MCD
47000	47002	2013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Not MCD
47000	47109	2013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 (except contributions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100		Not MCD
47000	47068	2013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100		Not MCD
47000	47003	2013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100		MCD
47000	47011	2013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MCD
47000	47012	2013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Not MCD
47000	47112	2013	CEI-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Not MCD
47000	47015	2013	CGIAR	CGIAR Fund		100		MCD
47000	47134	2013	CTF	Clean Technology Fund		100		MCD
47000	47027	2013	CP	Colombo Plan		100		Not MCD
47000	47105	2013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100		Not MCD
47000	47013	2013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Not MCD
47000	47025	2013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Not MCD
47000	47132	2013		Commonwealth Secretariat (ODA-eligible contributions only)		100		Not MCD
47000	47026	2013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Not MCD
47000	47022	2013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Not MCD
47000	47138	2013	CoE	Council of Europe		40		MCD
47000	47037	2013	EROPA	Eastern-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100		Not MCD
47000	47113	2013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100		Not MCD
47000	47034	2013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00		MCD
47000	47036	2013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100		Not MCD
47000	47040	2013	FFA	Forum Fisheries Agency		100		Not MCD
47000	47106	2013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100		Not MCD
47000	47123	2013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100		Not MCD
47000	47122	2013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100	1311	MCD
47000	47129	2013	GEF-LD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100		MCD

47000	47130	2013	GEF-SC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100		MCD
47000	47044	2013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100	811	MCD
47000	47045	2013	Global Fund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100	1312	MCD
47000	47136	2013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00		MCD
47000	47116	2013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Not MCD
47000	47061	2013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00		Not MCD
47000	47065	2013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00		Not MCD
47000	47067	2013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00		Not MCD
47000	47019	2013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Not MCD
47000	47050	2013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00		Not MCD
47000	47059	2013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100		Not MCD
47000	30010	2013	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100		MCD
47000	47107	2013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100		MCD
47000	47058	2013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100		Not MCD
47000	47064	2013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100		Not MCD
47000	47066	2013	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00		MCD
47000	47046	2013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the Francophonie	100		MCD
47000	47073	2013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sation	100		Not MCD
47000	47074	2013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00		Not MCD
47000	47076	2013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100		Not MCD
47000	47127	2013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sation	100		Not MCD
47000	47077	2013	MRC	Mekong River Commission	100		Not MCD
47000	47078	2013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100	812	MCD
47000	47117	2013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100		Not MCD
47000	47128	2013	NDF	Nordic Development Fund	100		MCD
47000	47081	2013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100		Not MCD
47000	47080	2013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100		Not MCD
47000	47079	2013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100		MCD
47000	47082	2013	OECE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100		Not MCD
47000	47140	2013	OEI	Organis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100		Not MCD
47000	47110	2013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78		Not MCD
47000	47131	2013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4		MCD
47000	47087	2013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100		Not MCD
47000	47097	2013	SPREP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00		Not MCD
47000	47083	2013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sation	100		MCD

51000	47063	2013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100			MCD
51000	47020	2013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100			MCD
51000	47021	2013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100			MCD
51000	47070	2013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100			MCD
51000	47071	2013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100			MCD
51000	47075	2013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0			MCD
51000	47099	2013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00			MCD
51000	47056	2013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100			MCD
51000	47103	2013	WU	World Maritime University		100			MCD
51000	47008	2013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MCD
51000	47104	2013	WorldFish Centre	WorldFish Centre		100			MCD
52000	52000			Other					

출처: <http://www.oecd.org/dac/stats/annex2.htm>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연구개발팀(ODA Research & Development Team)

KOICA 연구개발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1호
-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 글로벌 CSR 사례집
-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 국가협력전략(CPS) 수원국 사업환경 분석과 역량진단
-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타당성)조사와 수원국 역량진단
- 새마을운동 성공요인과 개도국 적용가능성 및 한계 보완방안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2호
-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KOICA 사업모델 발굴
- 교통인프라 ODA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연구
-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 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가이드라인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모잠비크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독일 GIZ의 정책 및 수행체계
- ODA 사업에서 효율적인 의료기기 지원 방안 연구
- 글로벌 CSR의 개발협력 현황과 발전과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KOICA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영향과 국제협력의사 출신 보건의료인의 역할 제언
- 환경분야 ODA 사업 유·무상 연계 방안 연구
-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of 63 Cities and Provinces and Analy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Vietnam (Vol.1, 2)
- 개발협력사업평의 평가 및 성과중심관리를 위한 평가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 미디어, 통신 매체를 활용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발전방안 연구
- 개발공헌지수(CDI)의 의의와 한계 및 우리원조에 대한 시사점 고찰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3호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4호
- ODA 의료보험분야 공여기관별 사례 연구 및 KOICA 의료보험 사업 적용 방안 도출
- 한국ODA 중점협력국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가나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2: 나이지리아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3: 르완다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4: 모잠비크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5: 에티오피아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7: 카메룬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8: DR 콩고 사례
-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9: 총괄 보고서
-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연구

개발과 이슈

- [14호] 임팩트투자 및 DIB 논의와 시사점
- [15호] 녹색기후기금과 능력배양사업(Readiness Program)
- [16호] 적정기술과 시장중심적 접근법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 [17호]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분석 및 우리원조 대응방안
- [18호]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 지수를 중심으로
- [19호]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 초안 분석
- [20호]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 : 논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
- [21호] 한중일 대외원조정책 비교분석
- [22호]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 [23호] 물과 분쟁,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Working Paper

- [2014-1]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 [2014-2] Revisiting the Roles of Development Aid: Resonated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2014-3] Enhancing Readiness Programs for the Green Climate Fund
- [2014-4] The Practice of Industrial Policy – Lessons for Africa
- [2014-5] It worked in China, so why not in Africa?
- [2014-6] The practice of industrial policy-Lessons for Africa
- [2014-7] Policy co-ordination and growth traps in a middle-income country setting
- [2014-8] The practice of industrial policy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01-033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발행 2015년 4월 28일
발행인 김 영 목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연구개발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화 031) 740-0114
팩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동 화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309-4 93320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01-033

ISBN 978-89-6469-309-4 93320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